

남북경제협력과 대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revitalization of  
Daejeon regional economic

金泰憲

## 연구진

연구책임

- 김태헌 /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 문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탁가공과 대북투자를 위시한 남북교역과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세분화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분야는 그동안 남북한 간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왔지만,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재차 도약단계로 진일보시켰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평화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해결, 자원개발, 농업보건의료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정치적 여건의 변동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북경제관계가 과거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매우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 지자체간의 민간교류와 이를 통한 남북한 주민간 신뢰회복 뿐만 아니라, 상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실현 등이 담보될 때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와 여타 자치단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연구라 사료되며, 시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간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2008. 12.

대전발전연구원장 육동일



# - 목 차 -

제 1장 서론	3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 2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제 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7
제 2장 남북경협 성과와 문제점	9
제 1절 남북경협의 경과와 추진체계	11
1. 남북경협 연혁	11
2. 남북경협의 추진체계	15
제 2절 남북경협의 현황분석	22
1. 일반현황	22
2. 개성공단	28
3. 금강산/개성관광	34
제 3절 정부의 남북경협 지원 시스템	36
1. 남북협력기금	36
2. 청산결제시스템	39
3. 손실보조제도	41
4. 연구 개발/정보제공	42
제 4절 남북경협의 문제점	43
1. 내독무역과 남북경협의 비교분석	43
2. 남북경협의 현안문제	49
제 3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59
제 1절 지방정부의 대북 경협 중요성	61

1. 독일 지방정부간 경험의 성과 .....	61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64
제 2절 지자체의 남북 경험의 현황 .....	64
1. 지방정부의 남북 경험 총괄 현황 .....	65
2. 경기도의 남북경협 .....	65
3. 강원도의 남북경협 .....	75
4. 기타 시·도의 남북경협 .....	78
제 3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의 한계점 .....	82
<b>제 4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대전의 역할 .....</b>	<b>85</b>
제 1절 남북경협 활성화에 관한 기업 대상 설문 조사 .....	87
제 2절 남북경제교류 협력과 대전의 역할 .....	103
1. 대전의 산업특성 SWOT 분석 .....	103
2. 남북경협에 대한 대전의 역할 모색 .....	112
<b>제 5장 결론 .....</b>	<b>121</b>
<b>참 고 문 헌 .....</b>	<b>127</b>

## - 표 목 차 -

〈표 2-1〉 남북 경제협력 합의사항 .....	14
〈표 2-2〉 남북출입사무소 승인 및 검역 업무 .....	21
〈표 2-3〉 남북교역 유형 .....	23
〈표 2-4〉 연도별 경협 사업자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	24
〈표 2-5〉 인적교류현황 .....	24
〈표 2-6〉 남북경협발전 현황 .....	25
〈표 2-7〉 사회문화교류 분야 남북왕래 인원 .....	25
〈표 2-8〉 이산가족 상봉 행사 .....	26
〈표 2-9〉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민간차원 .....	27
〈표 2-10〉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당국차원 .....	27
〈표 2-11〉 대북지원 현황 .....	28
〈표 2-12〉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	30
〈표 2-13〉 개성공단 분야별 추진일지 .....	30
〈표 2-14〉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수출 현황 .....	33
〈표 2-15〉 업종별 생산 실적 .....	33
〈표 2-16〉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현황 .....	33
〈표 2-1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	33
〈표 2-18〉 금강산 관광객 현황 .....	34
〈표 2-19〉 개성관광사업 연혁 .....	35
〈표 2-20〉 개성 관광객 현황 .....	35
〈표 2-2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 .....	38
〈표 2-22〉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별 지출(남북협력계정) .....	39
〈표 2-23〉 손실보조제도의 개요 .....	42
〈표 2-24〉 내독무역과 동독의 대외무역 .....	44
〈표 2-25〉 내독무역과 서독의 대외무역 .....	45

<표 2-26>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경협의 비중 .....	48
<표 2-27> 남과 북의 원산지증명기관 .....	53
<표 2-28> 미국의 대북 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	54
<표 3-1>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현황 .....	62
<표 3-2>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	62
<표 3-3>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효과 .....	63
<표 3-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	66
<표 3-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현황 .....	67
<표 3-6>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협의현황 .....	67
<표 3-7> 경기도 대표단 방북 현황 .....	68
<표 3-8> 경기도 접경지역 현황 (2007년 말 기준) .....	70
<표 3-9> 경기도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	72
<표 3-10>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	74
<표 3-11>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현황 .....	76
<표 3-12> 강원도의 대북사업 내용 .....	77
<표 3-13> 제주도의 남북경협 .....	78
<표 3-14> 인천광역시의 남북경협 .....	79
<표 3-15> 서울특별시의 남북경협 .....	79
<표 3-16> 부산광역시의 남북경협 .....	80
<표 3-17> 인천광역시의 남북경협 .....	80
<표 3-18> 광주광역시의 남북경협 .....	80
<표 3-19> 울산광역시의 남북경협 .....	80
<표 3-20> 전라북도의 남북경협 .....	81
<표 3-21> 전라남도의 남북경협 .....	81
<표 3-22> 경상남도의 남북경협 .....	81
<표 4-1> 업체 분포현황 .....	88
<표 4-2> 사업영위 년도 .....	88
<표 4-3> 매출규모 .....	89



<표 4-4> 조직형태 .....	89
<표 4-5> 손해발생 시 부담여부 .....	92
<표 4-6> 남북경협 성과 자체평가 .....	92
<표 4-7> 남북경협 활성화 최우선 과제 .....	97
<표 4-8> 남북경협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분야 ...	98
<표 4-9> 남북경협 활성화 위한 사회·문화적 교류의 필요여부 .....	99
<표 4-10> 사회·문화 교류의 필요성 이유 .....	100
<표 4-11> 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한 비용부담 의사 .....	100
<표 4-12> 지역내 총생산 .....	104
<표 4-13> 대덕특구의 연구기관 분포 .....	105
<표 4-14> 대덕특구의 연구인력 분포 .....	106
<표 4-15> 대덕특구의 특허 대표적 사례 .....	106
<표 4-16> 대덕특구 연구장비 현황 .....	107
<표 4-17> 대덕특구의 첨단장비 .....	107
<표 4-18> 대전의 산업특성 SWOT분석 .....	111
<표 4-19> 연도별 남북한 공동연구개발 사업추진 현황 .....	113
<표 4-20> IT 남북협력사업 .....	116
<표 4-21> IT 협력 취소사업 .....	117
<표 4-22> 남북경협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적합여부 .....	118

## - 그림 목 차 -

[그림 2-1]	통일부 조직 구성도 .....	17
[그림 2-2]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성도 .....	18
[그림 2-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구성도 .....	19
[그림 2-4]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구성도 .....	20
[그림 2-5]	2007년도 남북교역 거래유형 .....	23
[그림 2-6]	개성공단 총 개발 계획도 .....	29
[그림 2-7]	개성공단의 협력체계 .....	32
[그림 2-8]	남북간 청산결제 형태 .....	40
[그림 3-1]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모델(안) .....	71
[그림 4-1]	남북경협 참여업체의 진출동기 .....	90
[그림 4-2]	남북경협참여형태 .....	90
[그림 4-3]	남북경협 참여 년 수 .....	90
[그림 4-4]	업체의 사업 중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 .....	91
[그림 4-5]	남북경협 수익성 여부 .....	91
[그림 4-6]	수익성 변화 예상 .....	91
[그림 4-7]	남북경협 성공 이유 .....	93
[그림 4-8]	남북경협 실패 이유 .....	93
[그림 4-9]	남북 공동사업 시 문제점 .....	93
[그림 4-10]	남북경협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94
[그림 4-11]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 여부 .....	95
[그림 4-12]	남북경협에 관심있는 이유 .....	95
[그림 4-13]	남북경협에 관심없는 이유 .....	95
[그림 4-14]	남북경협 참여시 진출 분야 .....	96
[그림 4-15]	미참여업체 남북경협 성공요인 .....	96
[그림 4-16]	참여업체 남북경협 성공요인 .....	96

[그림 4-17] 참여업체의 활성화 과제 .....	97
[그림 4-18] 미참여업체의 활성화 과제 .....	97
[그림 4-19] 참여업체 지원필요 분야 .....	98
[그림 4-20] 미참여업체 지원필요 분야 .....	98
[그림 4-21]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사회·문화적 교류 필요성 인식	99
[그림 4-22] 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의사 .....	100
[그림 4-23] 미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의사 .....	100



# 제 1 장

---

## 서 론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제 2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 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 제1장 서론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과거 동서독간의 내독 무역은 독일 통일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의 차이점을 이유로 한계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서독과 동독이 가지고 있던 상이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호 조화됨에 따라 꾸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즉, 내독무역은 서독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리 보다는 민족 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적 의미에서 중요시 되었고, 동독의 경우는 동독의 경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동서독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남북한의 경협은 동서독의 내독 무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은 동독의 경우와 같이 경제발전을 통한 안정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써 남북 경협이라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남한도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은 남북한간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남북한 모두 상호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로 가는 첩경 내지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88년 7.7 선언 이후 3대 남북경협인 남북교역,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 경협은 북한에게 자생적 경제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요소 가격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한 경제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에 상호 win-win 전략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점차 교류의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관계도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경협을 위한 주요한 회담이 1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대화는 양자간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간 신뢰관계가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차후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 단체들도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주로 대북 투자여건이 갖추어진 개성공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의 현황을 보면 2008년 7월 24일 현재 가동 기업은 72개사로써 2007년에 비하면 약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공단 내 공사가 진행 중인 55건 중 신축공장이 52개일 정도로 급속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2008년 상반기 남북교역 현황을 보면 상업적 거래는 전체구성의 9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41.5%로 상업적 거래의 절반이 개성공단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sup>2)</sup>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2년부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을 대비한 남북 교류활성화와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 협력사업과 개성지역 협력사업 그리고 기타 인도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상생을 위한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1998년에 남북 교류지원팀을 신설하여 대북 협력사업과 문화 사회적 교류 및 민간참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어자원 보호증식, 산림병충해 방제, 농업협력,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 경협에 관한 관심과 실천이 미흡하다. 이들은 관련된 부서 및 연구시설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로써 남북 경협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

---

1)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입주기업 현황

2) 통일부, 2008 남북교류협력 동향 7월



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구축과 평화 증진의 기반을 마련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아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남북경협 관련 대응방안은 전무한 상태이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의 연구배경에 기초하여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경제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대전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 제 2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남북경협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통일연구원, 북한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등 많은 국책 및 사설 연구단체와 학회에서 남북경협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남북경협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약간 다루고 있을 뿐, 매우 드문 것이 현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경협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영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통하여 독일의 사례를 기반으로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행정 통합과 국민 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실천방향으로써 지방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수행하도록 하되 실제적 협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민간단체를 활용한 교류활동 추진 및 사업 추진을 관련 전문부처 또

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 그리고 재정적 능력의 감안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장인봉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남북한 간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독일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 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간과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본격적인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여러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적 후유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당국에게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채경석은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탐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가 중앙정부와는 달리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능하고 또한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보완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동서독간 지역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대북 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익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에서 민족통일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절대적으로 실현해야할 과제이며 이들의 연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로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특히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관계가 독일 통일에 어떠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는지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도시간 자매결연의 실현에 대한 법적 내지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분석을 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의 타당성을 알 수 있으나 대전의 남북경협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

구는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남북한 간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협력방안 강구를 통해 남북경협 및 대전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에 그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대전시정의 정책적 마인드 제공 및 대전광역시 국제통상본부의 사업영역 확대에 본 연구물이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제 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학문적 접근보다는 현 시정여건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전망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계량화가 가능하다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통일부, 무역협회, 통일연구원의 실무진 및 전문가와의 세미나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전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기업들의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 및 상황 분석과 문제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대전지역의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남북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내용은 남북경협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와의 협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시정에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인식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제 2 장

---

### 남북경협 의 성과와 문제점

---

제 1절 남북경협 의 성과

제 2절 남북경협 의 현황분석

제 3절 정부 의 남북경협 지원 시스템

제 4절 남북경협 의 문제점

---



## 제2장 남북경협 의 성과와 문제점

### 제 1절 남북경협 의 경과와 추진체제

#### 1. 남북경협 연혁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양극체제의 종식과 함께 세계에 새로운 경제질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 동안의 적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민족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즉, 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및 남북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할 때가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첫 발걸음으로 남측에서는 1988년 7월 7일에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남북 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을 종결하고, 남북 간 교역과 문호를 개방하며,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을 기초로 하여 그 해 10월에는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가 발표되어 실질적인 대북한 교역이 허용되었고, 이에 최초의 남북한간 공식교역이 1989년에 성사되었다.

1989년부터 1990년 까지 남북 교역 실적은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 간 교류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범적인 소규모 거래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둘째, 홍콩·일본 등 제 3국을 경유한 간접 교역 형태로 인하여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되었기에 거래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적 이득이 적었다. 또한 품질관리의 경우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제 3국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해야하는 등 비 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남북교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다. 셋째, 남북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남북 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법적 안

정성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협력 기금 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남북교역에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지원제도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후 남북교류 협력 관계는 교류실적이 1990년 1350만 달러에서 1991년 1억 1130만 달러로 급증한 것을 보아 제도적 정비가 남북 교류 협력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하고 이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남북 경협에 대한 정치적 안정성을 높였다. 그 해 9월에는 남북 교류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로 지적되어왔던 간접교역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간접 교역 형태로 이루어졌던 남북교류를 직교역 형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효율적 거래형태로 인한 남북교류발전 저해원인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인하여 대금결제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1994년 10월에 열린 「제네바 합의」에서는 북미 간 핵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북경협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한 북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는 한달 후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남북기업인의 상호방문, 소규모의 시험성 대북투자, 국내기업의 북한 지역사무소 설치 등을 허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북경협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1994년 남북 교역액은 1억 9460만 달러에서 1995년 2억8730만 달러로 약 50% 정도의 급성장을 하였다.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교역액이 3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1998년 남한이 IMF관리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남한 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남북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15일에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남북 정



상이 만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져옴을 합의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된다. 이 회담에 따라 발표된 「6·15 공동선언」상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에 관한 합의사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써 남북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

2001년에는 인천-남포항의 운항차질과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및 국내 경기 침체 등 악조건에 불구하고 남북 교역은 지난해(2000년; 4억2520만 달러)와 큰 차이없는 높은 수준(2001년; 4억290만 달러)을 유지하였다.

2002년에는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역은 변함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거래성 교역이 높은 증가 추세를 유지한 것과 함께 대북 식량 차관의 제공 및 경의·경원선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등 비거래 교역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8월에는 「투자보장 합의서」·「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청산결제 합의서」·「상사분쟁 해결 합의서」라는 남북 경제협분야 4대 합의서가 발효되고, 2005년 10월에는 남북 경제협력협의 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진전되었다. 이에따라 민간 분야의 경제협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민간 경제협범위를 보면 초기 평양 중심의 소규모 제조업 위주 협력사업에서 벗어나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업, 임업, 경공업, 광업 및 IT분야로 확대되었다.

그 이후에도 남북 교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이라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 비하여 27.8%가 증가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건설자재 장비 반출, 건설 중장비재 반입 및 생산품 반입 증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증가 등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2일에는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에 의한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

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 차원 높은 미래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담은 「6·15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남북경협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보면 남북 경협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투자 장려,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원개발의 추진,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는 우대·특혜 부여를 함을 합의하였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여 인천-개성-해주 황금의 삼각지대의 개발로 인하여 남북 교역의 중심지로 확대시킨다는 방안이다. 둘째,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의 조속한 완공과 2단계 개발 착수 및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물자수송, 통행, 통신, 통관문제의 해결이다. 셋째,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협의이다. 넷째,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 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이다.

**<표 2-1> 남북 경제협력 합의사항**

시 기	명칭	시대적 배경	의제 요점
1988. 7. 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냉전시대의 종결	-남북 간 소모적인 경쟁 종결 -남북 문호 개방 -남북 동포 간 상호교류 추진
1988. 10.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		-실질적인 대북한 교역 허용
1990.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거래의 법적 근거 제정 필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안정성 제공
	남북협력 기금법		-남북 협력기금 마련
1992.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거래의 불안요소 제거 필요	-남북 경협에 대한 정치적 안정성 높임
1992. 9.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남북 거래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남북교류를 직교역 형태로 전환 합의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	비정상적 거래형태 해결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 합의

1994. 11.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에 의해 북핵문제 해결 진전	-남북기업인의 상호방문 -소규모의 시험성 대북투자 -국내기업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
2000. 6.15.	6·15 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 -사회문화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 시킴
2003. 8.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6·15 공동선언 중 경제 협력 분야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써 남북간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제하는 제도	-남측과 북측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함
	투자보장 합의서		-상대국에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함 -투자자와 투자자산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
	청산결제 합의서		-남과 북의 기업은 각국의 은행을 통해 결제함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		-남북상사중재 위원회를 구성함
2005. 10.	남북경제협력협약개 설·운영 합의서	남북경협문제 상시 합의 채널 개설 필요	-남북간 경제 거래 투자 소개와 지원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활동 보장
2007. 10.4.	10·4 선언	6·15 선언의 의미 재확인 및 확대 발전방안 모색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의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적극 추진 -남북경제협력 공동위 부총리급 격상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백두산 관광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합의

## 2. 남북경협의 추진체계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

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 인적교류 또는 교역은 제외한다.) 2000년 6월 15일에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남북경협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개편 및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부부처인 통일부를 비롯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재정적 지원, 통관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부처를 개편 또는 조직하였다. 다음은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조직들이다.

## 1) 통일부

남북경협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부처는 통일부이다. 통일부는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된 통일업무를 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써 4·19 이후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개성공단사업 지원단, 기획 조정실, 통일 정책국, 남북교류 협력국, 인도 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아래 통일부는 남북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통일교육·홍보 및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일부의 구체적인 관할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정책 수립·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치군사, 사회문화, 경제과학 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군사·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회담을 총괄한다. 셋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과 체육, 문화, 학술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 및 결산·평가를 수행한다.

[그림 2-1] 통일부 조직 구성도



다섯째,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한간 인도적문제와 관련된 대북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문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여섯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 실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서쪽의 경의선과 동쪽의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따라 육로로 이동하는 인원·물자의 남북한간 출입을 관리한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정치·경제적 사항을 모두 총괄하는 것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한 대표적 정부부처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은 1969년 7월 법률 제2122호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공포되어, 한국외환은행에 수출입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중·장기 신용부를 설치하였다가, 1976년에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이 발족됨으로써 설립되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남북한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유일한 남북경협외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산하에 남북경협 관련 전담부서인 남북협력본부를 갖추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2-2]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성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는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는 남북협력기금 실무와 청산결제 이다. 여기서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수단이며 또한 민간의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일한 남북경협외의 금융지원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지원의 실무를 담당하며 기금의 관리(기금계정관리, 회계사무처리, 여유자금 운용),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과 함께 청산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산결제란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반출입거래 시 교역대금을 쌍방 청산결제은행(조선무역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1년 단위로 그 대차차액을 청산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4년 6월 24일에 개성에서 조선무역은행과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당국 및 은행간 합의서는 양측 서명권자의 서명 등 발효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다. 이로써 남북간 교역에 대한 직접 대금결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적인 금융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는 남북경협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비영리 전담기구로써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의 개발의 실무적·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사업체로써 시작되었다. 이 사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위탁업무수행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향후 남북 당국간 추가 합의사업 이행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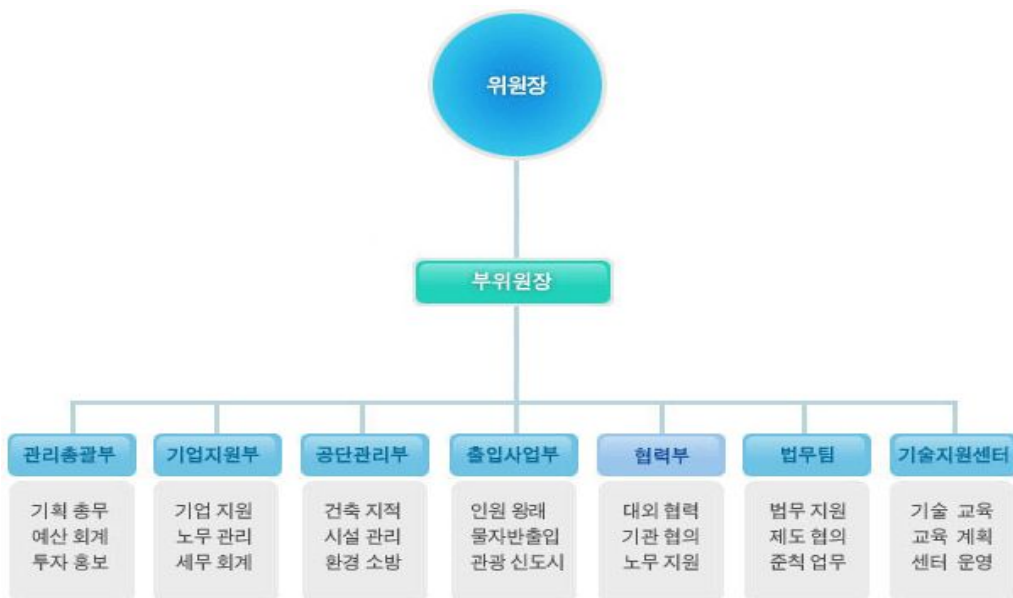
[그림 2-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구성도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의 주요업무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위탁업무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 에너지 설비·자재 등 대북제공사업, 경공업 원자재 대북제공 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책 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분석,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기타 남북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4)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그림 2-4]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구성도



개성공업지구 관리 위원회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으로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21조」에 의거 설립된 북측 법인이다. 이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과 협력하여 개성공업지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개,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투자안내, 입주기업 민



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경험관련 법령·기금지원제도, 남북경제 교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경험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주요업무는 인허가업무, 노무지원,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환경 및 소방, 물자 반·출입 등이며,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개성공단 내 입주한 기업들에게 원활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5) 남북출입사무소

남북 출입국 사무소는 남북 인적교류 및 물적 교류를 신속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경의선은 파주시 문산읍에 동해선은 고성군 거진읍에 설치되어 있다. 남북 출입국 사무소의 구성은 출입총괄과와 경의선·동해선 담당과로 구분되며 그 외에 물품검역, 반출입물품 검사 등을 위한 출입심사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

〈표 2-2〉 남북출입사무소 승인 및 검역 업무

차량	자동차운행승인· 통행차량등록증명서 승인 신청	교류협력시스템에 접속 [수송장비운행-자동차운행-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에서 해당정보 입력 후 확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승인서 인쇄, 출발도착보고서 작성, 출·입검 심사시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a href="http://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a> )
물품	반출입 물품 승인	교류협력시스템에 접속 [교역물품반출입-대북한 물품반출/반입-대북한물품 반출/반입승인신청서] 에서 직접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반출입신고서 작성
	식물검역	식목행사용 나무 반출 시 국립식물검역소에 수출식물검역신청서 제출하고 사전 검사 (경의선 : 031-950-5341~3, 동해선 : 033-680-5270~2)
	동물검역	동·축산물 반출 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동·축산물 검역신청서 제출하고 사전 검사 (경의선 : 031-950-5352~5, 동해선 : 033-680-5190~1)

(통행목적에 상관없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남북 출입국 사무소가 담당하는 업무는 관광·대북지원·회담 등과 관련한 초청장을 발급하거나, 개성공단 사업관련 및 개성공단 외 경의선지역 사업과 관련한 방북 승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북승인업무 외에도 남북 출입 차량, 물품에 대한 검문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 제 2절 남북경협 현황분석

### 1. 일반현황

개혁·개방·교류·협력·신뢰·투명화·안전평화 통일은 남북관계의 핵심화두이다. 남북경협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상생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의 남북경협은 사실상 민간 차원의 제한적인 범위의 협력에 머물렀으며, 인도주의적 목적의 비상업적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경협이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상업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여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상업적 경협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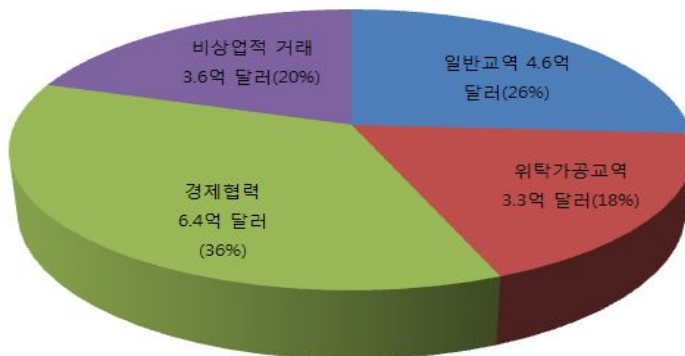
상업적 경협은 1995년 (주)대우 남포공단이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2000년 「6·15선언」을 계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4년에는 위의 사업이 진척을 보임에 따라 협력사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비록 200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등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잠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7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176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3〉 남북교역 유형<sup>3)</sup>

(단위: 백만 \$)

남북교역 유형		2004	2005	2006	2007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258	320	441	645
	경제협력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공업협력, 기타)	0	20	77	120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 협력, 경수로사업)	0	0	1	0
	반입합계	258	340	520	765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89	100	116	145
	경제협력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공업협력, 기타)	89	250	294	520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 협력, 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반출합계	439	715	830	1,032
남북간 실질교역 수지 (경제협력, 비상업적 거래 제외)		-168	-221	-326	-500

[그림 2-5] 2007년도 남북교역 거래유형<sup>4)</sup>



3) 2007 남북교류협력동향, 통일부

4) 통일부, 2008 통일백서

〈표 2-4〉 연도별 경험 사업자 협력사업(자) 승인현황<sup>5)</sup>

(단위: 건 수)

구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협력사업	1	5	9	1	2	5	2	2	26	32	23	176	284
협력사업자	11	16	13	2	1	6	3	4	28	29	24	176	313

인적왕래 또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에 맞추어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까지 남북을 방문한 수는 1989년에 총 2,980명이 왕래한 이래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 경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적교류는 급증하였다. 2005년에는 전년도 대비 332%가 증가한 88,341명이 상호 방문했으며 그 숫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유로 일방적인 남한의 북한 방문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유이며, 방북·방남의 비율은 극단적 대비를 보인다. 누적된 남북 방문인원을 보면 남한의 북한방문 인원은 지속적인 증가 속에 541,405명을 기록한 반면 북한의 남한방문 인원은 89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총 7,380명에 불과하다.

〈표 2-5〉 인적교류현황<sup>6)</sup>

(단위: 명)

연도별	89-00	01	02	03	04	05	06	07	누계
북한 방문	18,601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427,506
남한 방문	1,343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7,157
합계	19,944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434,663

비 상업적 경험은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그 양적인 크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 상업적 경험이란 문화, 예술, 이산가족, 체육, 종교 등 교류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포함한다. 비 상업적 경험은 남북 간 사회 문화 교류 추진 기반으로써 분단 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남북

5) 통일부, 2008 통일백서

6) 통일부, 2008 남북교류협력동향

갈등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남북경협발전 현황**

	최초 규모	2007년 규모	증가율
교역액 (만 달러)	1,872 (1989년 시작)	1,797,896	960배 증가
교역품목수 (개)	25 (1989년 시작)	852	34배 증가
경제협력사업승인 (건)	1 (1995년 시작)	176	

**<표 2-7> 사회문화교류 분야 남북왕래 인원**

(단위: 명)

구분	분야	'8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방북	교육학술	46	76	68	360	797	27	3336	827	2,783
	문화예술	139	134	513	34	784	286	138	271	2,395
	체육	649	310	326	1,190	5	799	266	1,198	4,890
	종교	146	86	165	584	376	1,231	788	4,899	8,275
	언론출판	206	82	84	253	107	1,122	487	289	2,630
	과학기술	67	13	37	51	121	0	43	113	345
	기타	924	2,215	1,308	923	1,367	7,066	2,266	4,720	20,789
방북소계		2420	2,916	2,501	3,395	3,557	10,777	4,324	12,217	42,107
방남	교육학술	-			18	41		21	19	99
	문화예술	359				141			30	540
	체육	210	1	765	717		78	4	213	1,988
	종교	-								0
	언론출판	-					60			60
	과학기술	-								0
	기타	421	31	172	206	98	537	268	221	1,954
방남소계		1,000	32	937	941	280	675	293	483	4,641
합계		3,420	2,948	3,438	4,336	3,837	11,452	4,617	12,700	46,748

초기의 비상업적 경험은 일회성의 이산가족 상봉 또는 문화교류 등 이벤트성 사업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교류 범위와 양이 확대되어 2007년에는 남북

한간 인적교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중장기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양적·질적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인적교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일방적인 사회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북 인원은 총 42,107명인데 반하여 방남 인원은 4,641명에 불과하며 남한의 교류인원은 각 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교류인원은 초기의 수에 비하여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상업적 경험 중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의 아픔을 나누고 통일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1985년 9월에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매년 2~3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실시됨에 따라 상봉자 수가 급증하였다.

**<표 2-8> 이산가족 상봉 행사**

행사	일자
1차 이산가족 상봉	1985. 9
2차 이산가족 상봉	2000. 8. 15 ~ 18
3차 이산가족 상봉	2000. 11. 30 ~ 12. 2
4차 이산가족 상봉	2001. 2. 26 ~ 2. 28
5차 이산가족 상봉	2002. 4. 28 ~ 5. 3
6차 이산가족 상봉	2002. 9. 13 ~ 9. 18
7차 이산가족 상봉	2003. 2. 20 ~ 25
8차 이산가족 상봉	2003. 6. 27 ~ 7. 2
9차 이산가족 상봉	2003. 9. 20 ~ 9. 25
10차 이산가족 상봉	2004. 3. 29 ~ 4. 3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면회소의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것이 완공과 함께 ‘상시상봉 실현’을 합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9차 적십자회담(‘07.11.28~30)에서 협의한 연간 상봉규모 각 400명, 분기별 화상상봉 각 40가족이 실시하게 되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대한 논의에 따라 금강산면회소가 개소(2007.12.7)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례적·상시적인 이산가족 상시상봉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08년도 이산가족 교류예정은 대면상봉 500가족, 화상상봉 160가족, 영상편지

120가족이며, 금강산 면회소 개소 및 상시운영으로 상봉규모 확대와 함께, 재상봉 등 상봉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 상시상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 이산가족 대상 고향방문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표 2-9>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민간차원**

(단위 : 건/(명))

구분	' 85-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계
생사확인	1,872	447	208	198	388	209	276	69	89	3,756
서신교환	5,153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11,093
제3국 상봉	366	148 (383)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3 (164)	1,638 (3,079)
방북상봉	6 (20)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1 (5)	30 (124)

**<표 2-10>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당국차원**

(단위 : 건/(명))

구분	' 85-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계
생사확인	65 (157)	792 (7,543)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6,579 (48,338)
서신교환	-	39 (39)	623 (623)	9 (9)	8 (8)	-	-	-	-	679 (679)
방남상봉	30 (81)	201 (1,720)	100 (899)	-	-	-	-	-	-	331 (2,700)
방북상봉	35 (76)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3,112 (13,669)
화상상봉	-	-	-	-	-	-	199 (1,323)	80 (553)	278 (1,872)	557 (3,748)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식량지원 및 민간차원의 무상지원이 급증하였고, 2004년에는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하여 재해 구호지원 목적으로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을 이유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전년도 대비 약간 감소될 뿐이었다. 그 동안 대북 식량지원

등 무상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내 봉사자들이 상주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로 발전함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1>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정부차원- 무상지원	1,878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96	2,159	13,929
정부차원- 식량차관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649	8,872
정부차원 (계)	1,878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96	3,808	22,801
민간차원 (무상)	14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20	7,171
총액	1,892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3,005	4,728	29,972

식량지원 외에 북한의 기초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WHO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영유아, 산모 지원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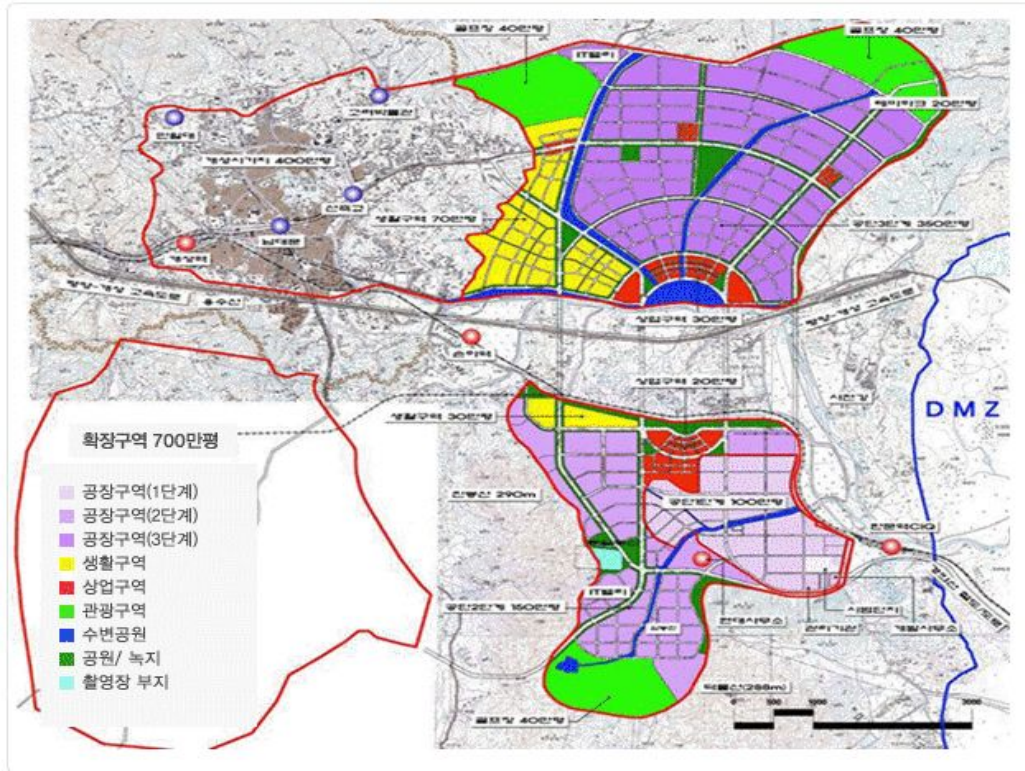
## 2. 개성공단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시작된 ‘3대 경협사업’ (개성공단사업, 남북연결 철도·도로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중 하나로써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 경협이 정부차원 또는 민간합동 차원 중심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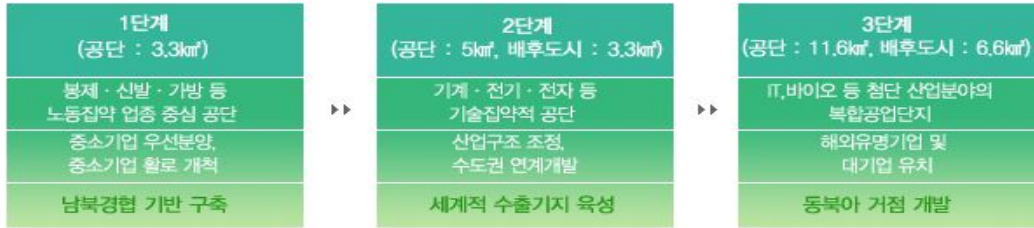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함으로써 남북이 모두 발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이다. 개성공단의 개발은 2000년

[그림 2-6] 개성공단 총 개발 계획도



8월에 현대아산과 북측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인하여 시작되었다. 그 후 2002년 북측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1단계 개발을 시작하였다. 1단계 개발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반을 구축함이라는 목표아래 봉재·신발·가방 등 노동집약 업종 중심의 공단을 만들었다.

<표 2-12>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표 2-13> 개성공단 분야별 추진일지

구분	추진내용	일자
사업자 조치	현대-북아태간 총 6,612만㎡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현대·토공-북측 간 개성공단 330만㎡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계약 체결	04.4.13
	토공, 시범단지 9만 3천㎡ 분양공고	04.5.18
	토공, 본단지 1차 16만 9천㎡ 분양공고	05.8.1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05.12.28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06.5.31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06.12.21
	토공, 본단지 2차 175만㎡ 분양공고	07.4.30
북한조 치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02.11.20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03.4~06.1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05.11.22
	북한측 통행 검사소 신축 건물 개소	06.5.22
남북 당국간 합의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02.12.8 (05.8.1 발효)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8.20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04.1.29 (05.8.1 발효)
	양 정상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합의	07.10.4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 (23개 기업 및 1개 기관)	04.6.14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출범	04.10.5
	개성공단지구 관리위원회 개소	04.10.20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04.12.15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05.6.3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05.12.5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 가동	06.10.31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06.11.21
	총 생산액 1억달러 달성	07.1.30

본단지 2차 175만 m <sup>2</sup> 분양공고	07.4.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7.5.25
총 생산액 2억달러 달성	07.9.30
북한 근로자 2만명 고용	07.11.5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 조사 착수	07.12.1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07.12.31

개성공단은 2007년에 1단계 계획을 완료하고 2단계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단계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1단계의 3.3km<sup>2</sup>의 공단규모에서 5km<sup>2</sup>를 추가로 확장시키며 이에 따른 배후도시를 3.3km<sup>2</sup>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1단계에서는 경공업 위주의 공단을 조성하였으나, 2단계에서는 기계·전기·전자 등 기술 집약적 공단을 구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출기점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지원 및 협력체계는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은 개성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측의 개성공단 사업지원단(통일부)과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되어있다. 우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개성 내에서의 투자, 기업운영, 출입 등을 관할하며 남북의 지원당국과 계획수립 및 조정 및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에게 각종 행정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남과 북의 지원부서인 개성공단 사업지원단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발사업 계획수립과 법적제도 확충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2-7] 개성공단의 협력체계



개성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07년 1월 말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8년 5월에는 총 3억 7,383억 US\$를 생산하였으며, 이중 7,918만 US\$를 수출하였다. <표 2-14> 참조. 개성공단 내 주요 생산물품을 구분하면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제품이며, 이들 중 섬유제품 생산 비중이 46.2% (2007년 기준)로 가장 크다. 이들의 생산실적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15> <표 2-16> 참조. 현재 개성공단에는 총 70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북한측 근로자 25,930명이 남측 근로자 947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표 2-17> 참조.

〈표 2-14〉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수출 현황

(단위 : 1,000 US\$)

구분	2005	2006	2007	2008	총누계 (08.1 분기 말 현재)
생산	14,906	73,737	184,779	60,770	334,192
수출	86	19,825	39,669	13,277	73,637

〈표 2-15〉 업종별 생산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증가율)	2007(증가율)
섬유	6,780	27,793(310%)	85,543(207%)
화학	1,768	10,900(517%)	18,262(67%)
기계·금속	5,250	20,853(297%)	41,947(101%)
전기·전자	1,108	14,191(1,181%)	39,027(173%)
계	14,906	73,737(395%)	184,779(150%)

〈표 2-16〉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현황

(2008년 5월말 현재)

구분	가동현황				
	섬유봉제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시범단지	3	2	17	5	27
본단지 1차	41	-	1	-	42
본단지 2차	-	-	1	-	1
계	44	2	19	5	70

〈표 2-1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분기
복측	6,013	11,160	22,804	25,930
남측	507	791	784	947

### 3. 금강산/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은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 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사업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초기의 금강산 관광은 동해항과 장전항을 잇는 해로를 따라서 시작되었다. 그 후 남북간 육로가 확충되면서 2003년 9월부터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2007년 상반기에는 북핵실험의 영향으로 관광객의 증가는 없었으나 6월부터 시작된 내금강 관광과 그 해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큰 호조를 보였다.

관광객의 현황을 보면 2007년 6월을 기점으로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누적 관광객이 150만 명을 돌파하였다. 그 해 10월 한 달 동안은 관광객이 1998년 이후 최고치인 63,000여 명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2007년 한 해 동안 34만 5천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표 2-18〉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명)

년 도	1998. 11-12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총 계	1,934,662									

개성관광은 2005년 8월에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개성 시범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쳐 1,600명이 고려 성균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의 시범관광을 실시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2006년에 들어서 북한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는 현대아산과의 내부갈등을 이유로 현대 아산과 맺은 관광사업 합의를 무시하고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을 시도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남북사업자간 합의 준

중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북한측을 설득함으로써 현대 아산과 북한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7년 11월 3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인하여 본격적으로 개성관광이 시작되었다.

**<표 2-19> 개성관광사업 연혁**

년도	사업사항
1998년 6월	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와 함께 방북
2000년 8월	故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차면담 후 7대 합의서 체결
2003년 3월	개성관광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2004년 12월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년 7월	현정은 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1차면담
2005년 8월	개성시범관광 실시 (3차례)
2007년 11월	현정은 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2차면담 (백두산 및 개성관광 합의)
2007년 12월	개성관광 실시

개성관광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일 300명 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 12월 말까지 7,400여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다. 사업자인 현대는 관광객의 증가추세 등 사업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1박 2일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개·보수 투자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표 2-20> 개성 관광객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08.1	08.2	08.3	08.4	08.5	08.6	08.7	누계
개성	1,484	-	7,427	9,049	8,540	11,400	11,536	11,954	12,161	11,607	85,158

2008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은 호황을 지속하였다. 2008년 1월 내지 7월 중 금강산 관광객은 276,213명으로 2007년(1월~7월 140,400명) 대비 약 97% 증가하였고, 개성관광은 관광이 시작된 2007년 12월부터 매달 꾸준히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에 외부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었을 것임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2008년 7월 13일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되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확산하기에 조속히 해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지속되어 8월 19일에는 금강산 관광에 관련하여 금강산에 파견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을 200명 이내로 줄이라는 북한의 요구가 있었고 현대는 이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골프장 등 부대시설 건설 직원은 그대로 체류하는 것을 볼 때 남북 긴장완화의 계기와 관광객에 대한 신변 보호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북한관광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 3절 정부의 남북경협 지원 시스템

### 1.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이며, 민간의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수단으로 실질적으로 유일한 남북경협 금융지원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1988년 7.7 특별선언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촉진 지원정책으로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협력기금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협력기금 법을 공포하고, 1991년 3월 남북협력



기금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남북협력기금 관련법은 「남북협력기금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리규정」(기금지원 일반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교역·경협분야 대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주체는 통일부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금관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있다. 또한 기금운용관리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의 심의를 받게 된다.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주요사업은 지원형태(무상지원, 대출, 손실보조, 차관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무상지원하는 경우는 주민왕래 지원, 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 민족 공동체 회복지원에 사용되는 경우로써 비상업적 남북경협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대출하는 경우는 반·출입 자금(교역, 위탁가공) 또는 경제협력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손실보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손실을 입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북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존하는 정치적 위험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남북간 식량차관에 관한 합의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경우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국도의 복측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장비를 차관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북·미 체네바 기본 합의에 따라 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2기를 유상 공급함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KEDO에 대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남북협력기금의 활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초로 기금이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12월말까지 총 4조 2,688억 원을 조성하였고 그 중 3조 6,937억 원을 사

용하였다. 사용내역을 보면 협력기금 운용 초기(1991년~2000년)에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 4491억 원을 사용하여 전체 운용의 대부분(94.9%)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협력기금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됨에 따라 2007년에는 인도적 지원에 전체의 56%인 3,946억 원, 남북경제협력분야에 전체의 42%인 3,012억 원, 사회문화교류분야에 전체의 1.2%인 86억 원을 사용하였다.

**<표 2-2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

(단위: 억 원, 2008년 2월 중)

구분		2007년 말	2008년 중	누계
조성	정부출연금	37,464	750	38,214
	정부 외 출연금	24	-	2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3,373	670	44,043
	대출금 회수	945	25	969
	기타수입	272	13	285
	기금운용수익	4,098	80	4,178
	합계	86,176	1,538	87,713
운용	기금지원	51,792	310	52,102
	.무상지원	24,359	208	24,567
	.유상지원	27,432	102	27,535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23,027	-	23,027
	사업비용	109	5	115
	사업외 비용	5,531	-	5,531
	자금운용	5,717	1,222	6,939
	.공자기금예탁	-	-	-
	.여유자금운용	5,717	1,222	6,939
	합계	86,176	1,538	87,713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정부 및 민간의 남북경협에 중요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조성과 남북공동번영에 기여해왔다. 현재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에 남북협력기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2-22>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별 지출(남북협력계정)**

(단위: 억 원)

구분	91~00	01	02	03	04	05	06	07	계	
사업비 합계	4,731	2,542	3,482	4,395	3,817	6,395	4,531	7,044	36,937	
인도 적 지원	쌀	2,721	190	1,058	1,897	1,124	1,985	102	1,462	10,539
	비료	1,283	639	833	836	966	1,264	1,200	962	7,982
	이산가족	38	13	20	30	32	133	99	269	634
	기타인도	449	337	302	329	155	410	863	1,253	4,099
	계	4,491	1,179	2,213	3,092	2,277	3,792	2,264	3,946	23,254
남북 경제 협력	철도·도로	146	898	670	1,121	1,104	1,978	888	635	7,441
	기업대출	-	461	357	162	298	171	389	1,102	2,940
	개성지원	-	-	-	-	69	263	771	770	1,873
	기타기반	62	-	5	1	27	79	92	505	770
	계	208	1,359	1,032	1,284	1,498	2,491	2,140	3,012	13,024
사회 문화 교류	인적왕래	3	3	237	11	10	38	53	17	372
	사회문화	30	1	-	7	32	75	74	69	287
	계	33	4	237	18	42	113	127	86	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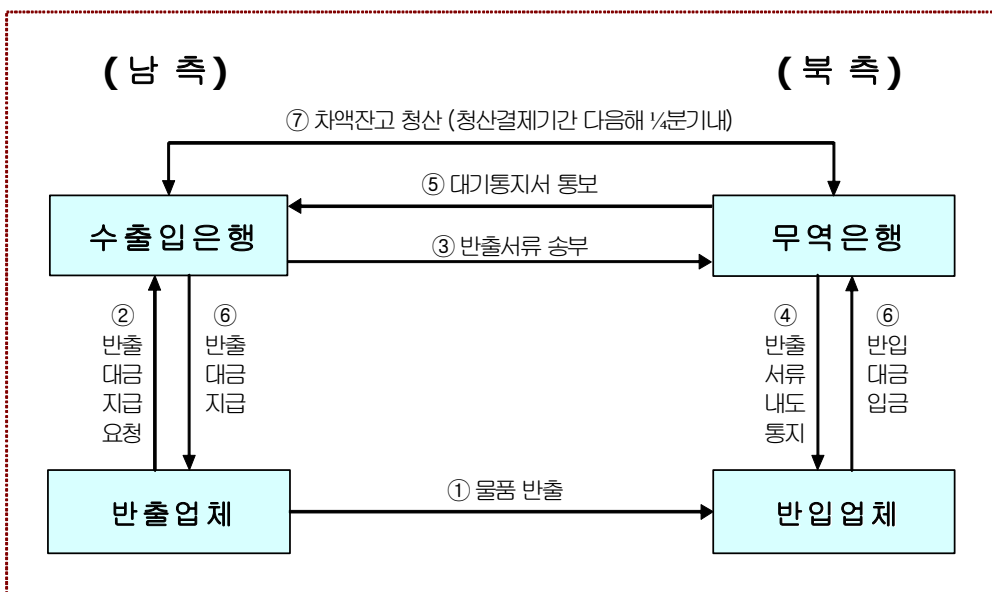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정부 및 민간의 남북경협에 중요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조성과 남북공동번영에 기여해왔다. 현재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에 남북협력기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2. 청산결제시스템

남북간 거래에 있어 대금결제(물물교환)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현실은 남북경협의 발전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여 한계를 극복하고자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청산결제제도란 국가간 교역에 대해 매 교역대금을 쌍방 청산결제은행의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1년 단위로 그 대차차액을 청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사회주의국가간

또는 경화가 부족한 시장 경제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에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교역대상 품목은 무역의정서 형태로 매년 해당 국가간에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청산결제에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중국·홍콩 등 제3국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남한: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어 결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물품 반출후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게 되어 대금회수의 안정성이 높아짐으로써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남북간 청산결제 형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하여진 청산결제업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산결제의 대상거래는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반출입 거래 (위탁가공교역은 대상에서 제외)로서 통일부로부터 청산결제 반출입 승인을 받은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청산결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입계약서에 “대금결제는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로 한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둘째, 대상품목과 기간, 한도는 매년 남북 당국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결제통화는 US

\$로 규정하였다. 남북교역 기업간에도 계약은 미 달러화로 하여야 하나, 반출 및 반입대금 결제는 미 달러화 또는 원화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넷째, 거래대금 결제에 관하여는 남북교역기업이 반출 또는 반입 후에 해당국의 청산결제은행에서 반출대금을 지급받거나 반입대금을 결제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남북간 청산결제 형태는 그림<2-8>과 같다.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는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청산결제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합의에서는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합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하여 2003년 12월에 남북청산결제실무협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는 2000년에 협의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이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 협의에 따라 남북은 교역규모, 청산결제 시행초기의 시행착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청산결제한도를 미화 3천만달러 범위내로 하고 신용한도와 이자율은 각각 15%와 1%로 정하였다. 또한 2004년도 청산결제거래는 2004년 중 합의되는 시기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내용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2004년 1월에는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회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2004년 합의서와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 사이의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 안에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 협회가 최종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청산결제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 3. 손실보조제도

손실보조제도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보험의 일종으로써

민간손해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현재 남북경협에 있어 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약정불이행 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진출기업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또는 진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손실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조제도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비상위험(非常危險)과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구분된다. 비상위험이란 북측 당국의 수용·전쟁·송금불능·합의불이행·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신용위험이란 북측계약 상대방의 파산·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하여 손실을 입게되는 위험을 말한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는 참여업체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표 2-23> 손실보조제도의 개요**

구분	담보위험	손실보조 비율	수수료율	기업당 약정한도
교역손실보조	비상위험 신용위험	50%(신용+비상) 70%(비상)	0.4%~0.8%	10억 원
경협 손실보조	비상위험	개성공단: 90% 기타지역: 70%	연 0.5% (중소기업 25%할인)	50억 원 (20억 원)

수출입은행은 남북간 교역 손실보조제도 시행을 통하여 북한진출 기업이 귀책사유 없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 보조의 범위는 교역손실의 경우 50~70%, 경제협력사업 손실의 경우 개성공단은 90% 기타지역은 70%이다.

#### 4. 연구 개발/정보제공

남북경협이 상생의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상호간 연구, 올바른 정보의 제공 및 효과적인 발전방안의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

다.

북한에 관한 정보는 통일부에 설치된 북한자료센터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전문 도서관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는 경험과 관련한 법령·기금지원제도, 남북경제교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경험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연구기관은 통일연구원이 대표적이다.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연구로서 경제·사회·문화 분야 남북 교류협력 연구를 이론과 정책개발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연구방향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과 남북한 통행·통신·통관 절차 개선 및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및 연구개발은 앞으로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 제 4절 남북경협의 문제점

### 1. 내독무역과 남북경협의 비교분석

내독무역이 독일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입증된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양독의 대외무역에서 내독무역이 갖는 의미는 상호 상이하였다. 동독은 내독무역의 경제적 실리에 의미를 둬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와 달리 서독은 민족 화합과 독일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양국의 상호 다른 이해관계는 내독무역이 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다.

〈표 2-24〉 내독무역과 동독의 대외무역<sup>7)</sup>

연도	내독무역 IDH (백만 DM)	동독 대외무역 DAH (억VM)	IDH/DAH (%)	IDH/OECD무역 (%)
1960	2 082,0	18,5	11,3	57,9 <sup>①</sup>
1965	2 466,5	24,7	10,0	51,9 <sup>①②</sup>
1970	4 411,5	39,6	11,1	45,7
1975	7 263,9	74,4	9,8	37,7
1980	10 872,8	120,1	9,1	33,0
1985	15 536,8	180,2	8,6	29,4
1987	14 014,3	176,6	8,0	29,3

동독의 대외무역에서 내독무역이 점유하는 비율은 1981-1985년 평균 약 8%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에는 10%대, 70년대에는 9%대, 80년대에는 8%대로 점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에는 11.3%에서 1975년 9.8%, 1980년 9.1%에 이어 1987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하강했다. 1973년도의 경우 동독의 총 대외무역볼륨에서 서독(내독무역)은 9.2%의 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34.6% 점유율의 구소련과 9.3%의 점유율을 가진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 제 3위의 무역거래 규모를 가졌다. 폴란드는 서독(동서독무역)에 이어 9.0%로 4위를 마크했다. 동독 대외무역 규모의 27.9%수준을 점유했던 서방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무역규모 중에서 1973년 서독과의 무역은 33.1%로 최고의 지분을 점유했다.

그러나 1989년도 총 대외무역볼륨에서의 무역파트너의 순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1989년 내독무역(서독)은 동독의 대외무역거래에서 9.3%를 점유하게 되었고, 이는 38.9%의 비중을 차지한 1위의 소비에트연합과 8.6%로 3위에 위치한 체

7) ①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제외

② 일본 포함 (1964.04.28 가입)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6, Reihe 6, 각호.

Statistisches Jahrbuch der DDR, Berlin (Ost) 1989,



코슬로바키아 중간의 2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각각 7.5%, 6.1%의 지분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었다. 동독의 對COMECON무역이 197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동안, 동독의 총 대외무역에서 점유하는 내독무역의 지분도 축소되었고, 동독의 OECD무역에서 차지하는 내독무역의 지분 역시 1960년도의 57.9%에서 1970년 45.7%, 1989년 29.3%로 경감되었다. 이는 동독 수출입구조의 다각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외무역규모가 전년대비 -7.3%를 하락하던 1988년 이후 동독경제의 내독무역에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표 2-25〉 내독무역과 서독의 대외무역<sup>8)</sup>

연도	내독무역 IDH (백만 DM)	서독 대외무역 BAH (백만 DM)	서독 동구무역 BOH (백만 DM)	IDH/BAH (%)	BOH/BAH (%)	IDH/BOH (%)
1960	2 082,0	90 669	4 254	2,3	4,7	48,9
1965	2 466,5	142 099	5 593	1,7	3,9	44,1
1970	4 411,5	234 882	9 794	1,9	4,2	45,0
1975	7 263,9	405 902	26 067	1,8	6,4	27,9
1980	10 872,8	691 708	36 892	1,6	6,0	29,5
1985	15 536,8	1 000 975	54 193	1,6	5,4	28,7
1989	15 308,9	1 147 506	54 449	1,3	4,7	28,1

서독의 총 대외무역 볼륨에서 내독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도 2.3%에서 1970년도 1.9%를 거쳐 1980년도 1.6%, 그리고 1989년도 1.3%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서독정부의 독일 재통일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서독무역의 일반 사회·정치적 의미를 도외시한다면, 서독 측면에서 내독무역의 대외경제적 순수의미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다. 한편, 서독 총 대외무역 볼륨에서 차지하는 서독의 對동구권무역의 비중은 1984년에서 1989년까지 평균 4.9%에 달했으며, 특히 1975년도에는 6.4%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서독의 對동구무역에서 차지하는 내독무역의 비중감소는 서독이 국제정치무대의

8)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1972,1991,1995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개선하고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서독의 동방무역 볼륨은 1970년도를 기준시점(1970=100)으로 했을 때, 1970년도의 97억9400만 DM에서 1975년도 260억6700만 DM으로 약 266.2% 가파르게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동일기간 내독무역의 볼륨도 44억1150만 DM에서 72억6390만 DM로 164.7% 동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이 증가폭은 對동구 무역 총 볼륨의 증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서독의 전체 교역국을 무역규모로 서열화한다면, 1973년 동독(내독무역)은 덴마크와 스페인의 중간 순위인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독일통일 당해년도인 1989년에는 153억890만 DM의 거래규모와 함께 14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억8200만 DM의 거래규모를 달성했던 구소련(13위)과 136억1620만 DM의 거래규모를 기록한 유고슬라비아(15위) 간의 중간위치를 의미한다. 핀란드 및 노르웨이는 각각 서독의 16번째, 17번째의 주요 무역파트너였는데, 동서독무역은 이러한 서독의 對핀란드 무역 볼륨(128억5600만 DM)과 對노르웨이 무역량(124억7380만 DM)보다 큰 규모였다.

남북경협에서도 내독무역의 경우와 유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한의 대외무역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경제적 의미는 지극히 경미하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경협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대외무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경협의 비중분석과 남북경협 실리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대에 침체기를 지속하였다가 2000년을 기점을 점차 회복되어 2003년에는 1990년의 수준의 반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북한 경제가 회복되는 동안 남북경협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남북 경협량이 북한 대외무역의 44.9%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보아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북경협과 내독무역의 발전추이를 교역 출발시점으로부터 정량적으로 각각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남북경협은 내독무역의 도입 및 적응단계를 넘어 이미 도약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남북경협은 1989년을 기준연도로 했을 때, 2006년 말 13억 4980만 달러로 만 불로 72.18배 증가했다. 이는 1952년 이래 시작된 내독무역

이 독일통일의 원년인 1989년도에 달성한 내독무역 누적 증가율 38.4배 보다 훨씬 상회한 규모로, 무역규모의 증가속도는 독일의 경우보다 더욱 가속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경협 비중(2006년 44.9%)은 동독의 대외무역 대비 내독무역의 비중(1980년<sup>9)</sup> - 9.1%)보다도 약 4.9배정도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현상은 북한의 폐쇄적 대외경제정책과 1990년대부터 지속된 내부경제 침체로 말미암은 인접국에 대한 경제지리적 무역편중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對중국무역(2006년 39.1%) 및 對태국·러시아·일본무역(2006년 16.2%) 의존도가 남북경협의 경우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총량적 남북경협규모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편승해, 남북경협이 내독무역의 성장템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든지, 남북경협이 내독무역의 발전단계상 제2단계 적응단계를 넘어 제3단계인 도약단계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든지 하는 수량적 통계적 수치만을 가지고 남북경협을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자족감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대외무역 다각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갖는 통계상의 경제적 의미는 반비례적으로 감소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경협 비중이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연계하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북한이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경협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한 남북한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통일 지향적으로 계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을 내독무역과 비교해 볼 때, 남북경협이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내독무역을 능가하고는 있으나, 경협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다재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당국은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 실무회담에서야 비로소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재 등 기초적인 남북경협 관련제도의 틀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2000년도 성장률에 상응

9) 남북교역의 2000년도 통계와 내독무역의 1980년도 통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남북교역 및 내독무역을 출발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북교역의 2000년도 성장률 2273.8% (1989=100)는 내독무역의 1979년도 성장률 2334.1% (1952=100)에 상응하기 때문이며, 비교년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1979년 대신에 1980년도의 통계를 대용하고 있다.

〈표 2-26〉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경협 비중

(단위: 백만\$, %)

구분	북한 대외무역 (AU)				남북경협 (IN)				IN/AU (in %)		
	수출 (X)	수입 (M)	수출입(T)		對남한 반출(x)	對남한 반입(m)	반출·입(t)		x/X	m/M	t/T
			총액	Index*			총액	Index			
1989	-	-	-	-	18.7	0.1	18.7	100	-	-	-
1990	1960	2760	4720	100	12.3	1.2	13.5	72.2	0.63	0.04	0.3
1991	1010	1710	2720	57.6	105.7	5.6	111.3	595.2	10.5	0.3	4.1
1992	1020	1640	2660	56.4	162.9	10.6	173.4	927.3	16.0	0.6	6.5
1993	1021	1620	2641	56.0	178.2	8.4	186.6	997.9	17.5	0.5	7.1
1994	839	1269	2108	44.7	176.3	18.3	194.6	1040.6	21.0	1.4	9.2
1995	736	1316	2052	43.5	222.9	64.4	287.3	1536.4	30.3	4.9	14.0
1996	726	1250	1976	41.9	182.4	69.6	252.0	1347.6	25.1	5.6	12.8
1997	904	1272	2177	46.1	193.1	115.3	308.3	1648.7	21.4	9.1	14.2
1998	559	883	1442	30.6	92.3	129.7	221.9	1186.6	16.5	14.7	15.4
1999	515	965	1480	31.4	121.6	211.8	333.4	1782.9	23.6	21.9	22.5
2000	556	1413	1970	41.7	152.4	272.8	425.2	2273.8	27.4	19.3	21.6
2001	650	1620	2270	48.1	176.2	226.8	402.9	2154.6	27.1	14.0	17.8
2002	740	1520	2260	47.9	271.6	370.2	641.8	3432.1	36.7	24.4	28.4
2003	780	1610	2390	50.7	289.3	434.9	724.3	3873.3	37.1	27.1	30.3
2004	1020	1840	2860	60.6	258.1	439.1	697.1	3727.8	25.3	23.9	24.4
2005	1000	2000	3000	63.6	340.3	715.5	1,055.8	5645.9	34.1	35.8	35.2
2006	950	2050	3000	63.6	519.6	830.2	1,349.8	7218.2	54.7	40.5	44.9

주: \* Index : 1990=100 (단, 남북경협은 1989=100)

하는 내독무역의 1979년도 상황, 즉 내독무역의 도약단계에서는 동서독간 경제교류 협정사항에 대한 수차례의 수·개정 작업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의 질적 수준은 내독무역에 비해 낙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성적 발전의 틀을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 교역 및 경협절차의 간소화, 교역품목의 제한 완화조치, 기존 남북한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실무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독무역과 남북경협의 비교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대외무역에서 내독무역,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북한과 동독은 서독과 남한과의 교역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서독과 남한은

경제적 실리보다는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내독무역과 비교할 때 총량적인 남북경협규모의 증가추세가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수량적 비교로써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내독무역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셋째, 남북경협이 발전속도 면에서는 내독무역을 능가하고는 있으나, 경협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다재한 것이 사실이다. 내독무역과 비교할 때 유사한 교역수준에서 법적·제도적 확충이 미흡한 점을 볼 때 남북경협의 수준이 질적으로 낙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2. 남북경협의 현안문제

남북경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문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불안정성과 경협에 대한 입장차이, 북한의 체제붕괴 우려에 의한 소극적 태도,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채산성 악화, 북한 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법적 제도적 장치미비, 자유로운 통행·통신의 제약과 국제 상관행에 대한 북측의 이해부족, 상품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 경협업체의 영세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남북경협이 발전함으로써 북한이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체제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북한은 남북경협의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방 개혁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의 남북경협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 의한 일방적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낮은 경제수준과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구매력이 없다, 또한 남한의 측면에서는 공단제품 또는 일부 농산물이나 광물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제품을 구매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은 상호교역이 아닌

남한에 의한 일방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북한 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 북한 내 투자환경은 개성공단 이외의 타 지역에는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로·용수·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북한 내 사업환경 개선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수년간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경제난의 영향을 덜 받는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상기 서술한 정치·경제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산결제방식 (무이자 차월신용 및 스윙계정의 필요성)

남북경협 사업 참여자들은 남북경협에 있어 대금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이행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 해외지사가 있기 때문에 제 3국을 통한 대금결제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 3국을 통한 대금결제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작용하며, 제 3자인 중개상을 통하여 대금결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경비소요는 남북경협 참여기업들의 현안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경협에 있어 직접적 결제수단(청산결제제도)의 필요성은 내독무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내독무역에서는 상호 반입 및 반출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결제 수단으로 결제단위 VE(Verrechnungseinheit)를 사용하였다. 베를린협정의 상품 리스트 규정에 따라 반출·입 대금은 서독의 연방은행(Bundesbank)과 동독의 중앙은행(Notenbank)간에 설정된 청산계정의 하부계정 I, II에서 결제되었다. 하부계정 I(Unterkonto I)에서 결제되는 교역품목은 상품리스트 I에 속하는 상품군으로 이에선 철·금속, 비철금속, 기타 광산물, 기계제작물, 선박, 전자·전기제품 등이 속하였다. 하부계정 II(Unterkonto II)에서는 상품그룹 II에 속하는 농수산물, 화학제

품, 케라믹 제품, 유리제품, 목재, 섬유제품 등의 교역대금이 결제되었다. 그리고 하부계정 III(Unterkonto III)은 서비스 용역의 결제를 위해 설정되었다.

내독거래의 무역대금 결제방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무이자 차월신용제도이다. 무이자의 차월신용제도(스윙)는 무역의 대차를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이것을 당사국의 중앙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오픈계정에 기장만 하여 그 대차잔액을 일정조건에 따라서 차후 결제하도록 하는 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오픈 계정을 통해 상호간 차월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 탄력성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이다. 스윙제도는 국제무역 관행상, 스윙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 설정되는 일은 없고, 다만 오픈계정에 있어 차월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내독무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제무역에서의 관행과는 달리 “Sonderkonto S” 라는 특별한 스윙계정(Swing Account)을 설정하였다.

내독무역의 촉진정책 차원에서 도입된 스윙은 일방적으로 동독에 의하여 전용되었다. 차월신용의 제도적 장치인 특별계정 S(스윙계정)는 1957년 11월 14일 동서독 중앙은행간 협정에 의해 195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스윙계정에서는 하부계정 I·II·III 상에서의 미결 청산금의 이월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내독무역에서 대금미결제로 인한 무역단절과 무역퇴조현상을 사전 억제할 수 있었다.

남북교역의 대금결제부문에 있어서 내독무역의 무이자 차월신용 및 스윙계정과 같은 특별계정 및 제도의 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기에 언급한 내독무역의 동독에 대한 특혜조치로 말미암아, “동서독무역, 과연 무역인가, 경제원조인가?” 라는 문제가 서독내부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스윙의 특별결제제도는 독일 경제통합의 주요한 도구로 작용하였다. 특히 동독의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와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착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스윙과 같은 극도의 경제적 이점과 특혜제공 없이는 내독무역의 지속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내독무역의 대금결제 사례를 볼 때 남북경협상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금결제에 있어 스윙계정의 설정은 남북경협상 대금미결제로 인한 무역단절과 무역퇴조현상을 사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간접적 대금결제

수단이나 제한적인 청산결제수단을 탈피하지 않는 한 대금결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남북경협이 발전에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동독이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와의 정치·경제적 유착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스윙제도 등을 도입하여 경제적 이점과 특혜를 제공하여 내독무역의 성공적인 확대를 이끌어낸 것처럼, 북한의 경우도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유착관계를 고려했을 때 특별한 유인책이 없이는 남북경협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남북경협의 대금결제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000년부터 남북간 직접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결제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청산결제실행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합의를 하였으나 최종실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8년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청산결제방식은 주목적이 교역수지의 균형이고, 교역수지균형을 유지할 경우 남북한간 반출·입 규모가 확대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청산결제방식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자유무역 확대추세라는 범세계적 환경변화와 북한의 개방지원에 역행한다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산결제방식 하에서의 제한적 신용한도 결정보다 무이자 차월신용계정으로서의 “스윙계정” 설정이 남북경협의 확대 차원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북한이 타국과의 교역보다 남북경협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기에 적합한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즉,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독 무역상에서의 무이자 차월신용 및 “스윙계정” 과 같은 특별계정 및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2) 원산지 규정

북한산 원산지 관련 현황을 국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제 2차 남북경협실무회담에 의하여 체



결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남측은 위 합의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써 대외무역법,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산업 자원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를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민족간 내부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2-27> 남과 북의 원산지증명기관**

구분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원산지증명 확인기관
남측	세관/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장
북측	민족경제협력위원회(중전: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조선무역은행)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원산지인 상품은 수출입제한조치에 걸리거나, 특혜관세율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타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불리한 경우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에는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에는 적성국 교역법, 무기수출 통제법, 핵확산 금지법 등이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경제활동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북제재조치들은 북한산 물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 3국으로의 판매 또한 제재함으로 인하여 남북경협상품의 해외 판매를 가로막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는 북-일간 관세협정이 없는 상태로써 북한산 물품이 특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순으로 점차 관세가 낮아지는데 북한산 물품(남북경협물품)은 국정세율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타국의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셋째, EU국가의 경우 북한산 물품에게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특혜관세율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태이다.

〈표 2-28〉 미국의 대북 제재의 근거와 관련법<sup>10)</sup>

근거	관련법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	적성국교역 법 (해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 법 (수출관리규정)
	방위산업 법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브레튼우즈협정 법	무역협정연장 법(무역법)
	수출입은행 법	대외원조 법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수출관리 법 (수출관리규정)	무기수출통제 법 (국제무기거래규정)
	수출입은행 법	대외원조 법
	국제금융 기관 법	대외활동수권 법
	해외민간투자공사 법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확산에 관한 제재	무기수출통제 법 (국제무기거래규정)	핵확산금지 법
	북한위협감소 법	
인권의 보호를 위한 제재	해외지원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이러한 북한산물품이 처한 대내·외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대내적 교역에 있어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산으로 위장반입 및 원산지표기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남북경협질서를 왜곡시키고 내수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남북 상호간 신뢰성 훼손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국과 무역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 남한은 WTO가입 국가로써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하여 남북간 체결된 상호협정을 여러 국가에게 확대 적용하여 국가간의 무역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나 남북경협은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외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WTO 및 국제사회와의 무역마찰 및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대외적 교역에 있어서 대북수출입 제한 조치는 남북경협제품의 해외시장개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관세 등을 통하여 불리한 대우를 함으로서 남북경협제품의 국제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10)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조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p.26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협제품의 판매에 있어 일부는 남한의 수요로 충당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해외시장을 겨냥한 판매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3) 남북교역의 국제법적 승인문제

남북교역의 국제법적 승인여부는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선언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아직 없으나, 향후 남북교역이 직교역 형태<sup>11)</sup>로 전환되고 북한과 제3국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경우, 관련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91년 4월 미국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한국이 북한과 대량의 쌀을 비롯한 물자교역을 추진하면서 무관세 등 특혜조치를 취한다면, GATT에 의거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sup>12)</sup>는 반응을 보인 전례는 제3국이 현행 남북거래 관행에 대해 WTO위배라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향후 대북 경제제재를 완전 해제할 경우, 미국 등 제3국의 이의제기 가능성은 더욱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는 민족내부 거래로서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국제법적으로 국제기구에 의한 승인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남북교역은 현행법상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로 시행하고 있으나 남북한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자국에도 동일하게 MFN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제무역상의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다재함으로

---

11) 남북교역이 직교역 형태로 전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교역당사자간 자유로운 접촉과 직접 협상, 상호통신, 상업문건 및 상업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물류체계의 개선과 직항노선 개설, 거래은행간 환거래망 형성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서갑성, 홍금우: 남북한 교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문경영인연구, 제4집제1호, p. 141.

남북경협의 확대 및 심화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남북경협 특수성의 국제법적 승인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남북교역의 승인에 관하여 내독무역이 일부 EC회원국의 강한 비판과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으로 보호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독무역은 대외무역이 아니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무역 형태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대외무역도 내부거래도 아닌 제3의 무역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국에서는 중앙당국(대외무역 모노폴)에 의해서, 일국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상호 다른 경제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내부무역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서독 무역은 관세 정책적 특수성과 내부적으로 강력한 정경유착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서독간 기본협정 체결을 토대로 한 관세 및 농산물 수입부가세의 면제, 무역대금 결제상의 특혜 등이 동서독무역의 특수성으로 부각되어져 있었다.

동서독간 기본협정체결에 따른 동독에 대한 무역상의 특혜로 말미암아 EC회원국들은 동서독무역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 의정서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일부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C국가들은 로마협정의 틀에서 동서독무역의 당위성을 시인한 바 있고, 또한 동서독무역이 EC-서독간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무역의 특수성을 비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편, 동서독무역에서 동독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상 특혜조치는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회원국들의 시기 대상이 되었으며, 서독내부에서 조차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무역은 쌍방의 상호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관계, 즉 동독은 경제적 관점에서, 서독은 정치적 관점에서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내독무역의 국제법적 승인 사례를 볼 때 남북한간 교역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간 교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MFN 예외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독일의 내독무역과 같이 WTO내에서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것 둘째, 남

북 당국간의 국가차원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셋째, 특혜무역협정 체결 넷째, WTO의 Waiver 인정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내부거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시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칭 “남북한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현재 정부산하 연구기관 차원에서 구상 중에 있고, 향후 발족 가능한 소위 동북아경제협력체에서의 지역성장축으로서의 남북한 위상 제고차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UN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1949년 4월까지 실행되었던 남북한 지역간 무역, 소위 “38선 무역”의 선례<sup>13)</sup>를 들어 남북교역의 타당성과 역사성을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 4) 정경분리원칙

남북경협 참여업체가 직면하는 위험은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미시적 위험보다는 거시적 위험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당국의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와 국제적 정치 환경 등을 살펴볼 때 특정산업에 대한 통제의 강화나 제한보다는 정치체제의 변화나 외부적 충돌 등 거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은 다른 요인보다도 정치적 위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북미관계악화, 군사적 불안, 체제변화의 불확실성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 남북경협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그 영향을 받게 된

13) 소위 “38선무역”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은 독일 내독무역의 국제법적 승인배경에서 확인될 수 있다. 내독무역의 출발점이 되었던 연합군 점령지대간 교환무역, 소위 “Interzonenhandel (점령지대간 무역)”은 1945년 8월 2일 포츠담협정(포츠담회담에서 조인된 독일의 전후처리 방침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발전될 수 있었으며, 포츠담협정에서 “독일의 4개 점령지대는 연합군 군정에 의한 통치기간 중, 단일경제단위 (eine ungeteilte wirtschaftliche Einheit)로 취급된다”고 천명되었다. 이는 독일 점령지대간 무역을 민족내부무역으로 간주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되었고, 후일 EEC와 GATT에 의한 내독무역의 국제법적 승인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츠담 협정에 의해 시한적으로 승인된 Interzonenhandel (점령지대간 무역)은 1967년까지 1951년 9월 20일 체결된 베를린협정 이후에도 Innerdeutscher Handel(내독무역) 대신에 공식 명명되기에 이른다.

다.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기의 위험들을 회피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민간기업의 대북투자가 저해됨으로 인하여 남북경협 활성화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정치적 위험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남북경협참여 의지를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햇볕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남북경협에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은 북한핵 폐기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움으로써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의 확대여부를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추세를 말한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은 대외정책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끌고 나갈 형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등과 같은 남북경협이 북핵문제 해결(정치적 문제)에 진전 없이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도 북측의 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문제(정치적 문제)에 있어 남한 국민의 기대에 상응하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함으로써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발맞추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 요인을 남북경협과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함은 정치적 위험을 해소하기는커녕 그동안 공들여온 남북경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적 문제와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거 확실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남북경협의 발전은 북한을 점차적으로 개방의 길로 이끄는 첩병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정치적 문제는 북한 스스로 택한 개혁·개방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남북경협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장

---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

제 1절 지방정부의 대북경협 중요성

제 2절 지자체의 남북경협 현황

제 3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의 한계점

---





##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 제 1절 지방정부의 대북 경협 중요성

#### 1. 독일 지방정부간 경협의 성과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동서독의 지방정부간 교류는 사회의 기본단위가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 하였고, 이에 따라 신뢰구축과 평화증진이라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즉, 독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민간차원의 연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주민이 직접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초기의 독일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동독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하는 서독 정부의 교류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결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체결 과정에서 서독 측은 주로 종교차원의 교류 및 청소년 교류 등 비 정치적인 상호 교류를 포함하기 원하였고, 동독 측은 비핵지대화, 상호주권인정 등 정치적인 사안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즉, 서독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서독과 동독 주민이 서로 신뢰를 증진시키고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 반면 동독은 지방자치단체간 경협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한 것이다. 양자의 목적은 상이하였으나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기에 다음의 <표 3-1>과 같이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최초의 동서독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은 1986년 10월에 이루어진 자르론이스

(Saarlouis)시와 아이젠후텐스타트(Eisenhüttenstadt)시 간의 체결<sup>14)</sup>이다. 이후 지방정부간 적극적인 자매결연체결로 인하여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11월까지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은 62개에 달하였다.

**<표 3-1>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현황**

연도	1986	1987	1988	1989 10월까지	총
체결건수	4	17	28	13	62

체결된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을 보면 각 도시의 특성에 맞춰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즉, 정치·종교·사상·교육·산업 등에서 상호 연계되어 교류발전이 가능한 구조의 형성을 염두에 둔 결연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구분	자매결연 도시	공통점
정치적 성격	킬(Kiel)-스트랄룬드(Stralsund) 브레멘(Bremen)-로스톡(Rostock) 뤼베크(Lübeck)-비스마르(Wismar)	항구도시
	본(Bonn)-포츠담(Potsdam)	정치적 수도
종교적 성격	에어푸르트(Erfurt)-마인츠(Mainz)	
사상적 성격	트리어(Trier)-부퍼탈(Wuppertal)	엔겔스의 고향
	트리어(Trier)-바이마르(Weimar)	칼막스의 고향
교육적 성격	칼스루에(Karlsruhe)-할레(Halle)	대학도시
산업적 성격	딜링겐(Dillingen)-호이어스베르다(Hoyerswerda)	중공업도시 (철강, 석탄)
	발렌슈타트(Ballenstadt)-크론베르그(Kronberg)	고성(古城) 도시
	코른베스트하임(Kornwestheim)-바이센펠트(Weissenfeld)	신발산업 도시
	라이프찌히(Leipzig)-하노버(Hannover)	국제박람회도시
기타적 성격	호프(Hof)-플라우엔(Plauen)	국경인접지방자치단체 간 결연
	함부르크(Hamburg)-드레스덴(Dresden)	2차대전의 피해도시
	뉴런베르크(Nürnberg)-게라(Gera)	
	루드빅스하펜(Ludwigshafen)-데사이우(Dessau)	

14) 통일과정 연표, 주독 대사관, 2006

지방 정부간 교류 협력 내용을 보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주로 비정치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전시회·음악회 등 문화교류, 체육교류 및 청소년교류 등이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달리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은 순수한 목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발생하기에 정치적 위협의 발생에 의한 영향이 적다. 결국 이러한 낮은 단위의 교류 협력은 국가 전체의 통일을 위한 바탕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 정부간 교류 협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다음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1988년 독일 시 연합회는 도시 자매결연이 민족의 신뢰성 증진 등 독일 통일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 자매결연이 동독주민과 더욱 친밀해지며 결국 독일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결과 32개의 답변 중 14개 도시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12개 도시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부분적으로 긍정의 표시를 하였다. 반면 6개 도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3-3>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효과**

긍정	14개 도시	43.7%
유보 또는 부분긍정	12개 도시	37.5%
부정	6개 도시	18.7%
총	32개 도시	100%

긍정적 응답에서는 그 이유를 도시간 자매결연이 주민 상호간의 접촉 공포증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한 동독주민들의 생활실상, 생활조건 등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동독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였다. 즉, 분단으로 인하여 생긴 민족간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지방정부간 교류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 보아 동서독의 지방정부간 교류는 독일의 민족통합에 큰 밑바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동서독의 지방정부간 경험은 상호신뢰의 형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남북 경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간 경험은 다음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지방간 경험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간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견고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사회·문화 위주의 교류를 함으로써 주민의 상호 접촉을 이끌어내게 하였다. 이것은 양자간 선입견을 제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여 통일이 된 후 양자의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지방간 교류는 인접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은 인접지역간에 교류한 사례도 있으나 많은 수가 사상·산업·생산연계 등 여러 특징에 따라 결연을 맺었다. 남북간에 있어서도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강원도만이 지방간 교류의 주요 당사자가 아니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은 지방화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적합하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효과적인 남북경협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 외에도 기존의 일원화된 중앙정부 단위의 교류로 인하여 융통성과 신축성이 결여된 연결통로를 다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남북교류의 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제 2절 지자체의 남북 경험의 현황

## 1. 지방정부의 남북 경협 총괄 현황

2000년 이전의 남북한간 교류는 북한이 남한 정부와의 공식적인 경제협력보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선호했기에 비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재개를 계기로 하여 정부간 공식적 협의·협력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경협이 활성화되고 있다.

2007년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충북 제천시)에서 23건의 교류협력사업이 추진중이며, 총 160억 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7년에 부산, 전북, 경북, 제주 및 충북 제천시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로써 현재 대전, 충북, 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운영중이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남 등은 자체적인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산과 제주도는 기금설립에 관련한 조례제정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남한의 지자체 중 남북 경협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이다. 이들은 북한과 접경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이전부터 남북 경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사업 외에도 북한과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이들 이외의 지자체들은 주로 인도주의적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하였고 그나마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 경우가 많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2. 경기도의 남북경협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활성화 및 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다음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호혜와 협력의 원칙이다. 즉, 일방적 추진이 아닌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인프라 지원의 원칙이다. 이전의 지자체의 남북 경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북한의 농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이다.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북 사업에 대하여 공개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2001년 11월 9일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도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남북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1년 30억 원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227억 원에 달하였다. 기금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은 도내주민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여러 교류협력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2년 3월에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표 3-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07.12.31 현재 (단위: 백만 원)

구분	조성액 (A)			지출액(B)	잔액(A-B)	비고
	계	출연금	이자 등			
조성액	226,441	22,700	3,441	11,181	14,960	-

**<표 3-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현황**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회수	2	3	2	6

**<표 3-6>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협의현황**

일시	회의내용
05.4.19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결정
05.8.26	04년 기금사업 결산
	05년 남북교류사업 추가(식품가공공장 설비추가)
05.9.27	05 남북교류사업 추가(농자재 지원사업-콤바인 추가)
06.3.2	05년 사업성과 보고 및 결과보고
	06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규모
06.11.16	06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복
	향후 사업방향 논의
07.2.21	06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보고
	향후 사업방향 논의
07.3.116	07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심의
07.8.13	남북정상회담에 바라는 경기도 의제
	07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보고
07.8.21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 물자 지원
07.10.5	남북정상회담 평가
	향후 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 방향 논의
07.10.25	08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구체적 실천방향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남북기반사업의 체계적 추진, 통일대비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추진이라는 비전을 세워두고 있다.

### 1)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경기도의 남북교류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 협력 사업이다. 이는 남북분단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자재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져 북한의 농촌 지역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최초의 사업으로써 북한의

최소 행정단위인 리 협동농장 주민들과 남측이 사업내용을 서로 직접 협의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농촌 현대화 사업은 2005년 벼농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벼농사 협력사업을 9천평에서 30만평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기로 2006년 1월에 북측과 합의를 하였다. 또한 북측의 대규모(30만평) 벼농사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농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 현대화된 영농기자재 뿐만 아니라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도정시설 등 농업기반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동시 개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길포장, 주택 개보수 및 신축, 진료소, 탁아소 신축, 소학교 유치원 보수, 인민병원 신축 등 주거환경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표 3-7> 경기도 대표단 방북 현황**

방북일시	대상지	방북사유	방북인원	비고
02.6.24-29	평양/양강도	인도적 물자 지원	28명	
05.10.5~6	평양	벼농사협력 시범사업 벼베기	30명	
06.6.3~4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모내기	107명	
06.9.27~30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벼베기	39명	
07.5.30~6.2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모내기	29명	
07.10.20~23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벼베기	38명	
08.2.13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준공식	178명	

북측은 경기도와의 사업을 시범모델로 하여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미사일발사 및 북핵실험의 여파로 정세가 불안정하나 북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남북 모두 인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북한을 평화적인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호혜와 협력의 원칙하에 일방적이 아닌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교류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농업 등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도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위 사업이 지속적



으로 추진되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의 동의와 건전한 논의를 통해 공개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이 필요할 것이다.

## 2)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지원

생산비 증가로 인하여 생산성이 악화되어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생산지의 이전을 기획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저렴한 생산비, 인접성, 언어소통의 원활함 등을 이유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인프라, 정치적 문제, 결제 방식의 불확실함 등 선뜻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아산, 토공과 실무적 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도 차원에서 기업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확충을 기획하고 있다.

## 3) 통일대비 접경지역 지원정책 추진

분단 후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난 50여년간 토지이용의 규제와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함으로 부진한 성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가 낙후되었다. 최근 정부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와 2000년 6월 13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은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접경지역의 위상과 입지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해 초래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과 2000년 8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시·도 접경 지역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

〈표 3-8〉 경기도 접경지역 현황 (2007년 말 기준)

구분	행정구역 (읍·면·동)	면적 (km <sup>2</sup> )	인구 (명)	재정자립도 (%)
합계	46개 읍면동	2,402	516,031	
동두천시 (4동)	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92	60,824	24
고양시 (3동)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57	61,300	61
과천시 (4읍9면)	문산읍, 과주읍, 법원읍, 교하읍,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과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서면, 진동면	621	176,325	41
김포시 (1읍4면)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218	63,195	41
양주시 (1읍4면)	백석읍, 남면, 은현면, 광적면, 장흥면	225	64,508	37
연천군 (2읍8면)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중면	696	46,075	24
포천시 (6면)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493	43,80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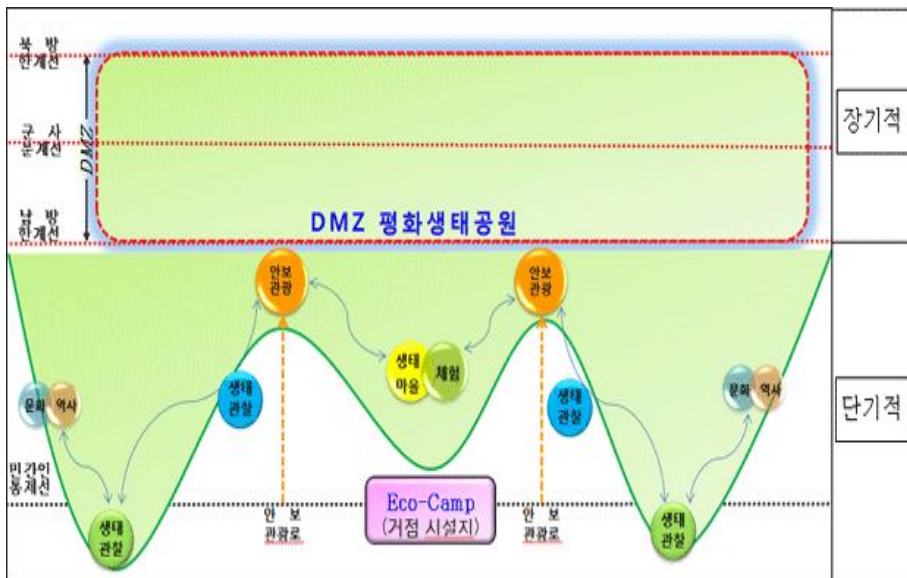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의 공간적 통합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기능의 체계적 배치를 촉진하고 접경지역의 공간적 연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공간적 통합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도 및 간선 도로연결사업의 추진과 배후지원 시설로써 공단·물류단지·배후도시를 개발하고 상호 기능의 배분과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낙후지역을 탈피하고자 한다.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접경지역에 광역 거점도시 및 교류협력 배후도시를 육성하고 지역간·지역내 도로개설 및 확장을 추진하며, 지역생활권마다 교육·복지·문화·의료 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접경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 산업단지·공장 집단지·물류유통센터 등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지원법」의 기업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성공단과 연계된 공단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자 한다. 즉, 전략물자 반출 문제 등을 비롯하여 IT, R&D, 원부자재 공급, 물류, 산업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배후기지를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함께 접경지역의 동반 발전을 하고자 한다.

셋째, 자연생태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과 남북대립의 현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남북화합과 한반도 평화질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비무장지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DMZ내에 평화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을 통하여 생물권 보전, 연수 교육, 관광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지역을 평화의 상징으로 변환시킴과 동시에 보전지역과 보전지역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던 경기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모델(안)



**<표 3-9> 경기도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사업기간)	사 업 비 (종합계획)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총계	41개 사업	2,441,781	945,903	486,578	228,001	781,299
완료 (10)	파주 적성 산촌개발 사업(02 ` 03)	1,463	763	182	168	350
	포천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02 ` 09)	340	102	119	119	-
	접경지역폐기물처리시설정비사업 (03 ` 10)	800	400	200	200	-
	접경지역정보화센터및중고PC보급 (03 ` 06)	480	240	240	-	-
	관문점등민북지역관광정비사업 (00 ` 05)	10,000	5,000	-	5,000	-
	김포대명포구어촌마을조성(01 ` 05)	9,000	-	4,500	4,500	-
	김포재활용종합센터건립(02 ` 07)	2,300	85	1,107	1,108	-
	포천경지정리용·배수로개보수(03 ` 05)	3,600	1,650	975	975	-
	접경지역정보화소외지역초고속통신망 구축(03 ` 06)	6,589	-	-	-	6,589
추진중 (14)	한강하구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운영(02 ` 07)	30,000	9,000	21,000	-	-
	접경지역정주환경개선사업(03 ` 12)	380,000	266,000	114,000	-	-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02 ` 11)	88,000	44,000	13,200	30,800	-
	포천영북지방산업단지조성(04 ` 07)	53,300	5,330	7,995	7,995	31,980
	동두천지방산업단지조성(04 ` 08)	30,000	3,000	4,500	4,500	18,000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02 ` 12)	127,650	12,765	19,148	19,147	76,590
	양주집단화산업단지조성(04 ` 09)	82,950	8,295	12,442	12,443	49,770
	연천군남임대산업단지조성(02 ` 09)	67,800	6,780	30,510	30,510	-
	임진강수해방지종합대책(99 ` 08)	437,200	437,200	-	-	-
	김포덕포진관광지조성사업(95 ` 06)	63,000	-	-	12,600	50,400

	연천고대산환경정비(04 ` 12)	8,000	-	4,500	800	2,700
	접경지역하천정비사업(03 ` 11)	100,000	-	100,000	-	-
	임진강 준설사업(08 ` 12)	53,914	-	53,914	-	-
	경기접경지역군부대토양오염실태조사(03 ` 08)	249	249	-	-	-
사업 지연 (2)	연천 도시가스 공급망확충(03 ` 06)	5,200	-	-	-	5,200
	경기DMZ 자연탐방로조성(04 ` 07)	2,000	600	1,400	-	-
사업 취소 (6)	DMZ생태문화관광자원합동조사(04 ` 07)	5,000	5,000	-	-	-
	연천 인삼가공단지 조성(03 ` 04)	3,500	-	-	-	3,500
	포천 연곡리 휴양촌 조성(06 ` 07)	5,000	1,050	225	225	3,500
	김포 하성생태공원조성(03 ` 06)	4,346	1,304	1,521	1,521	-
	경기농업정보화를통한전자직거래(04 ` 12)	4,400	440	3,080	-	880
	연천 조사료 단지 조성(07 ` 09)	2,000	500	300	200	1,000
시 기 미도래 (9)	파주 지방계임산업단지 조성(08 ` 12)	81,700	8,170	12,255	12,255	49,020
	연천 북삼리 통일생태 체험마을 조성(07 ` 08)	5,000	3,500	1,500	-	-
	동두천청소년미래포즈센터건립(07 ` 09)	10,000	4,000	3,000	3,000	-
	연천 대평리 휴양촌 조성(07 ` 08)	5,500	1,960	420	420	2,700
	포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사업(08 ` 12)	410,000	61,500	30,750	30,750	287,000
	연천 통일생태 교육기관건립(08 ` 12)	28,000	28,000	-	-	-
	파주 경협산업단지 조성(08 ` 12)	231,500	23,150	34,725	34,725	138,900
	연천 임진강 종합 촬영장조성(08 ` 12)	30,000	-	3,000	3,000	24,000
	양주 은현 체육공원(10 ` 12)	3,300	1,000	1,000	1,300	-
동두천 소요산관광지 조성(10 ` 12)	48,700	48,700	48,700	9,740	29,220	

#### 4)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경기도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에는 가극 ‘금강’을 6·15행사기간 동안 평양에서 공연하였다. 이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된 남한의 창작극으로써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교류에서는 의료용품, 식량생산 설비지원,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룡천 폭파사고 긴급 의약품 및 구호물자 지원 등이 있다. 경기도가 북한과 교류한 것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10〉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금액	대상지역	관련 민간단체
2002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제 180천㎡, 축구공 2002개 지원	1,000	양강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4	농업 : 경운기 100대, 콤팩트 20대 보건 :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버스 5대 식품 :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착공) 구호 :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1,340	황해북도 평양 룡천역 폭발현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5	벼농사 시범사업 : 3ha 농기자재 지원 : 농약 150톤, 분무기1200대, 손수레 1400대, 경운기 100대, 콤팩트 20대,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준공)	1,936	평양 황해북도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가극 ‘금강’ 공연	200	평양	(사)통일맞이
2006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 벼농사 협력사업(100ha), 채소재배 - 농업기반조성사업 : 이앙기, 경운기, 콤팩트 등농기계 지원, 도정공장 신축, 관정설치, 도로포장 등 - 환경개선사업 : 주택·유치원·소학교 보수 등	4,385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7	당곡리 농업현대화사업 - 벼 재배면적 확대(200ha), 채소재배 - 도정공장 완공, 농기계수리센터 신축 - 탁아소, 진료소 신축, 교육기자재 등	1,860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개성지역 산림녹화사업 - 온실하우스 설치자재, 종자 등	360	개성	
	수해물자 지원 : 라면, 밀가루	100		

경기도는 그 동안 평양, 개성 등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통일의 기반이 될 남북 SOC의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DMZ 평화생태공원 등 분단과 대결의 공간을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변환하는 통일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남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3. 강원도의 남북경협

강원도는 세계화·지방화라는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하면서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강원도는 물류기지, 평화기지, 관광개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3대 모델지역으로서의 거점지역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는 다음과 같은 기반조성을 하였다. 첫째, 1989년 9월 기획관리실에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을 설치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남북교류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대북사업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강원도협력협회」와 「북강원 연구센터」를 각각 설립하고 주민의 참여유도 및 각종자료 및 홍보자료의 발간하여 도민들에게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셋째,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였다. 이 기금은 강원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남북강원도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및 기타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된다. 넷째, 강원도에서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조례」 및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금조례」 등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남북교류에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광역단체 중 가운데 처음으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강원도 대표단이 북한의 북강원도와 평양지역을 공식방문(2000년 12월 16일~20일) 하였

다. 강원도 방북단은 방북기간동안에 남북 강원도간 협력을 위한 5개항의 기본합의서와 3개 협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지사의 북한방문은 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의 공식 초청방문이라는 점과 분단 55년 만에 남북강원도지사가 처음으로 만나 자치단체간의 남북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 대표단이 이용했던 동해-장전-원산-평양-원산-장전-동해 루트는 남측의 공식대표단이 처음으로 밟는 새로운 북한 방문경로로서 남북강원도라는 특수한 여건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방문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강원도간의 기본적인 협력과 몇 가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합의는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남북강원도가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남북 강원도간에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실천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은 강원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교류사업 내용이다.

**<표 3-11>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0	못자리용 비닐 27,000롤, 씨감자수송지원	248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1	어린연어 공동방류(55만 마리)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기자재 못자리용 비닐 6,000롤, 자전거	238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2	어린연어 공동방류(50만 마리) 연어부화장 건설 부화장비 및 건축자재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기자재	1,277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3	어린연어 공동방류(50만 마리) 연어부화장 건설 부화장비 및 건축자재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기자재	1,180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4	어린연어 공동방류(50만 마리)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기자재 도로보수자재	1,183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5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기자재 농민기술강습소 운영물품(냉온풍기, 미니버스)	562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6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기자재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	1,369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7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기자재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 수해복구 판유리 지원(10,000㎡)	1,124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표 3-12〉 강원도의 대북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금강산 병해충 방제	-北강원도 산림병충해 공동방제(2001년 ~ 현재)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7회 9,500ha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5회 5,000ha * 사업비 총 1,573백만원(산림청 및 강원도 자체예산) * 강원도는 향후에도 매년 솔잎혹파리 1,500ha, 잣나무 넓적잎벌 1,000ha 정도를 방제할 계획
원산농업기술 강습소보수	-北강원도 원산 농업기술소 개보수(2004.6 ~ 2005년말) 강원도가 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형태로 북 강원도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함의 의미를 두고 있다. *북한 강원도 농촌경리위원회 소속 농민기술강습소 (연건평 1,500평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2004.6.10) * 총사업비 950백만원중 남북교류협력기금 447백만원 지원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2006.3.2-5, 춘천) 개최 남측 대학선발팀(혼합경기)·강원랜드(시범경기)와 북측 지역선발팀간 친선경기 명칭: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기간: 2006.3.2~3.5 방문자: 36명
2014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남북협력사업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협력사업(완료)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협력 * 삼지연 빙상장 아이스링크 시스템 제공 및 설치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지자체 최초의 민속축전으로 남북주민의 문화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 행사명: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속문화축전 기간: 2005.9.27~9.29(2박3일) 참가인원: 남측 216명, 북측 130명

연어자원보호증식 사업	-남북강원도가 공유한 동해안 어족자원 증식 규모확대와 북강원도 주민의 대체식량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 1차 방류 (2001.4.7, 55만 마리, 북고성 남강지류 등 남북 공동방류) 2차 방류 (2002.4.8, 50만 마리, 남강 15만 마리, 남대천 35만 마리) 3차 방류 (2004.4.8, 50만 마리, 남강 15만 마리, 남대천 35만 마리) -북한의 항구적인 연어 생산기발시설 확충 (연어부화장) 북강원도 안변군 과평리, 연간 500만 마리 생산규모 (부지 6,000㎡, 건축물 700㎡) -북강원도 전역의 양어 사료 공급기지조경 (연어사료공장) 북강원도 안변군 남대천변, 부지 2,314㎡, 건물 826㎡, 생산량 1t/d
인도적 지원	-못자리용 비닐 지원 2000.12.16 도지사 방북 시 못자리용 비닐 9,000롤 지원 (총 27천롤, 도 9천·농협 18천)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성금 전달 대한적십자사강원도 지사장을 통하여 5만 달러 전달 (2004.4.27) -북강원도 수해복구물자 지원 판유리(1만㎡) 지원 2007.10.26 (육로수송)

#### 4. 기타 시·도의 남북경협

경기도와 강원도 이외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남북경협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계적인 사업구성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일회성 지원 또는 이벤트성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구성하지 못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출연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를 통한 경협을 시도하고 있다. 이하 각 시·도의 남북경협 사업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3> 제주도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1998	감귤 100톤	163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1999	감귤 4,336톤	1,367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0	감귤 3,031톤, 당근 2,000톤	1,419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1	감귤 6,105톤, 당근 4,000톤	3,087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2	감귤 4,000톤 북한어린이 겨울옷보내기 5,000벌	478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3	감귤 7,500톤 목초종자지원 2톤	766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4	감귤 8,107톤 북한어린이 겨울옷보내기 600벌 의약품 지원 14억상당	2,250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5	감귤 3,049톤, 당근 7,000톤 의약품 지원 13억상당	3,072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6	감귤 260톤, 당근 4,100톤 건축자재 지원 : 4,000만원상당	1,017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2007	감귤 10,000톤(예정) 제주감귤주스지원 1.5L 60,480병	3,000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표 3-14〉 인천광역시의 남북경협

사업명	사업 내용
제16회 아시아육상 선수권대회 북측 초청	<input type="checkbox"/>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측 대표단 초청 ○ 기간 : 2005.8.28~9.5 ○ 대회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문학보조경기장 ○ 북측 144명(선수단 20명, 청년학생협력단 등 124명) 참가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2005.8.5) *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지원(196백만원)

〈표 3-15〉 서울특별시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5	북한 아동 대상 제과원료 지원	1,030	
2006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수해지원	350 200	(사)장미회
2007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수해지원	500 300	(사)장미회

**<표 3-16> 부산광역시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6	“겨레사랑 평양 항생제공장” 건립 및 원료지원사업('06.1-12)	10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007	항생제 공장 건립 및 생산원료 등 지원 북한 수해물자 지원(의약품, 수해복구 자재 등)	750 12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표 3-17> 인천광역시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5	페인트(124톤) 및 피치(10,000톤) 지원	3,097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007	평양축구장 현대화 사업 지원 (인조잔디, 페인트, 포설장비 등)	699	(사)평화3000

**<표 3-18> 광주광역시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7	북한 수해지역 주택 복구 지원 - 시멘트 912톤, 강재 112톤	170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표 3-19> 울산광역시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4	농업용 못자리 비닐 지원	10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용천역 폭발사고 복구비 지원	100	
2005	농업용 요소비료지원(500톤)	213	
	모란봉 국수공장 설비 및 재료 지원	130	
2006	대북 수혜금 전달	30	
2007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	919	남북나눔공동체
	옥수수 국수공장 설비지원	47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표 3-20〉 전라북도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5	농기계 수리공장(64평 규모) 지원, 농기계 (콤바인, 경운기 등) 및 농자재 지원	1,786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006	농기계 및 축산시설 지원(농업용 비닐, 콤바인 6대, 이앙기 100대 등)	427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007	평남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 우리 민족돼지공장」 지원 - 돈사, 축분처리장, 관리동, 소독시설 등	1,113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표 3-21〉 전라남도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2	통일쌀 보내기 운송비 지원	10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005	못자리용 비닐, 모내기·온실자재 등 통일쌀 지원	83	전남도민남북 교류협의회 우리겨레하나 되기운동본부
2006	평양비닐온실지원사업(비닐온실 4,000평, 저온창고 80평)	100	전남도민남북 교류협의회
2007	평양 발효콩공장 건립 지원	880	전남도민남북 교류협의회

〈표 3-22〉 경상남도의 남북경협

(단위: 백만 원)

년도	지원한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등	지원 금액	관련 민간단체
2005	남북농업교류를 통한 식량증산, 기술교류	105	우리겨레하나되기운 동본부
2006	장교리협동농장과 농업분야 교류 - 벼육묘공장 1동, 남새 비닐온실 10동 설치 - 공동벼농사 130ha, - 이앙기 250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지원, - 통일딸기 모종 반입 1만주	936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007	장교리협동농장과 농업분야 교류	2,493	경남통일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벼농사 200ha,</li> <li>- 통일쌀기 모종 반입 25천주</li> <li>- 남새온실 10동 건립 및 지원,</li> <li>- 농기계지원 관리기, 콤바인, 경운기 등</li> <li>- 농기계보관 창고 1동 건립</li> <li>- 장교리 소학교 건립</li> </ul>		협의회 외
---	--	-------

### 제 3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의 한계점

독일의 사례를 보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류가 남북경협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동서독과 남북한은 정치·문화나 국민성,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등 상이한 면이 많기에 독일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지방 정부 간 교류 협력이 독일의 통일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남북한의 통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남북경협은 높은 수준의 경협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경협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단위의 경협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부족하다. 북한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 및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인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은 북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중앙정부가 관여를 하기에 지방단위의 독립적 교류에 대하여는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즉,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자금의 충당에 있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남북교류기금을 확보하기 보다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사

업을 계획·추진하지 못하고 자금 확보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사업이 일회성·이벤트성이 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조사분석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연계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도시규모, 역사적 유사성, 지명이 동일함 등을 이유로 교류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일회성 교류협력에 그치고 있다. 다섯째,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남측 지방자치단체가 타 시·도의 남북경협 성과에 자극을 받아 실적확보를 위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교류에 대가를 요구하는 등 상호교류에 일방적 지원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 구성원의 남북교류에 대한 호응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지방화의 시대를 맞아 남한의 각 지방정부들은 새로운 지방외교정책의 비전으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위한 역할을 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제 4 장

---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대전의 역할

---

- 제 1절 남북경협 활성화에 관한 기업 대상 설문 조사
  - 제 2절 남북경제교류 협력과 대전의 역할
-



## 제4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대전의 역할

### 제 1절 남북경협 활성화에 관한 기업 대상 설문 조사

#### 1) 설문개요

본 설문조사는 “남북경제협력과 대전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경제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대전·충남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남북경협 참여업체 74개,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75개를 표본으로 총 14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8월 7일에서 14일까지 책임연구원 및 연구조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의한 1:1개별면접을 통하여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남북경협 참여형태, 남북경협 참여분야, 남북경협 수익발생여부, 남북경협 성공요소, 남북경협 활성화 저해요소, 활성화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적절성 여부, 남북경협업체에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의 형태 조사,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 교류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등이다.

설문조사 및 분석절차는 윈도우용 SPSS 14.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문항별 빈도 분석과 백분율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일부 문항에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응답 업체의 일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본 총 149개 업

체는 남북경협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를 모두 합한 개수로써, 남북경협 참여업체 74개,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75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중 남북경협 참여업체는 표본 74개 중 84%인 62개 업체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동남권, 중부권, 서남권에도 남북경협 참여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수도권에 비하여 매우 작다.

**<표 4-1> 업체 분포현황**

(단위: 개, %)

	남북경협 참여업체	비중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비중	총 업체	비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2	84	23	31	85	57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4	5	2	3	6	4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	5	7	48	64	53	36
서남권(광주, 전남, 전북)	3	4	2	3	5	3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조사대상 업체들은 사업영위를 5년 이상 지속한 경우가 125개 업체로써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다. 이중 남북경협 참여업체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인 업체가 28개 업체(38%)로써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북경협 미참여업체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업체가 30개(40%)로써 가장 많았다.

**<표 4-2> 사업영위 년도**

(단위: 년, %)

	남북경협 참여업체	비중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비중	총 업체	비중
1년 미만			2	3	2	1
2년 이상 ~ 5년 미만	5	7	17	23	22	15
5년 이상~10년 미만	18	24	30	40	48	32
10년 이상~15년 미만	28	38	14	19	42	28
15년 이상	23	30	12	16	35	23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조사대상 업체의 매출규모는 다음과 같다. 응답 중 연 매출규모가 20억 이상이라 응답한 업체는 71개 업체로써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그 중 남북경협 참여업

체는 연 매출이 20억 이상인 경우가 46개 업체(62%)로써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참여업체의 경우에는 20억 이상(33%)이라는 응답과 5억 이상 ~ 10억 미만(31%)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매출규모**

(단위: 원, %)

	남북경협 참여업체	비중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비중	총 업체	비중
1억 미만			1	1	1	1
1억 이상~5억 미만			12	16	12	8
5억 이상~10억 미만	11	15	23	31	34	23
10억 이상~20억 미만	17	23	14	19	31	21
20억 이상	46	62	25	33	71	48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조사대상의 조직형태는 대부분 회사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전체의 76%) 이러한 응답 외에도 회사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비법인 단체라는 응답이 23%를 차지하였다.

**<표 4-4> 조직형태**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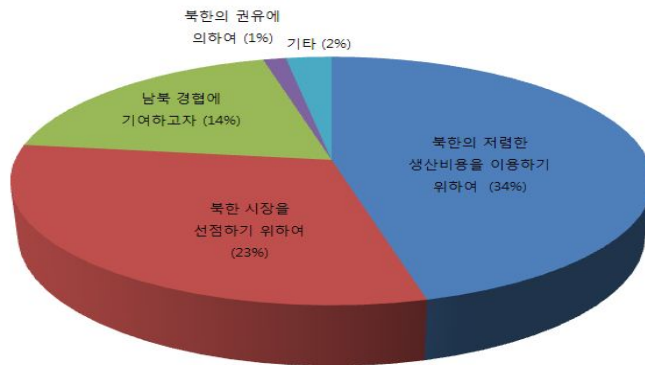
	남북경협 참여업체	비 중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비중	총 업체	비중
개인사업체	5	7	7	9	12	8
회사법인	61	82	52	69	113	76
회사 이외의 법인	6	8	6	8	12	8
비 법인단체	2	3	8	11	10	7
기타			2	3	2	1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 3) 남북경협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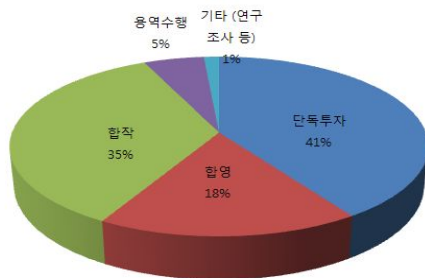
### (1) 남북경협 참여업체

남북경협 참여업체들은 사업 진출 동기를 살펴보면 “북한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용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34%로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라는 응답과 “남북경협에 기여하고자”라는 응답이 순서대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를 보면 많은 수의 기업들은 남북경협에서의 주된장점을 북한 내 저렴한 생산비용의 활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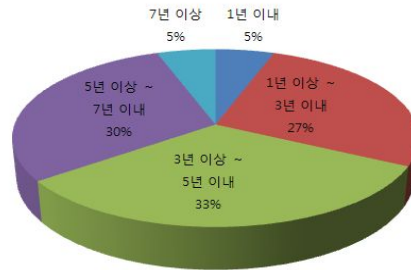
[그림 4-1] 남북경협 참여업체의 진출동기



[그림 4-2] 남북경협참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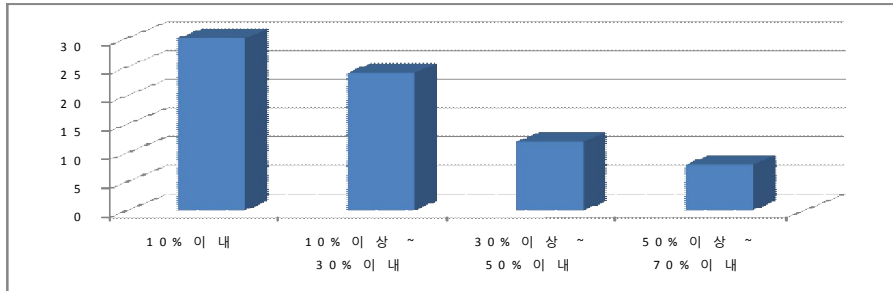
[그림 4-3] 남북경협 참여 년 수



남북경협업체들의 진출 형태는 단독투자(41%), 합작(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남북경협 참여년수는 3년 이상 ~ 5년 이내가 3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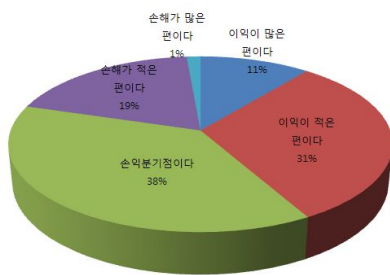
으며, 이와 근소한 차이로 5년 이상 ~ 7년 이내라는 응답(30%)과 1년 이상 ~ 3년 이내(27%)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업체의 사업 중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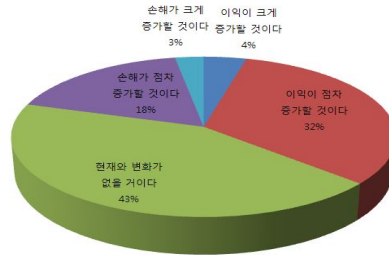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에 따르면 설문 대상이 된 남북경협업체들은 자신의 사업에서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개(41%)의 업체들은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내라고 응답했으며, 또한 10% 이상 ~ 30% 미만 이라 응답한 업체들도 24개(32%)에 달하여 다수의 업체가 남북경협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사업에서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라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8개 업체였다.

[그림 4-5] 남북경협 수익성 여부



[그림 4-6] 수익성 변화 예상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따른 수익 발생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수인 38%가 손

익분기점에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42%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반면 20%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 1%는 손해가 많은 편이라 응답하였다. 장차 수익의 변화에 대한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43%가 현재와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하여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하여 장차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긍정적 전망을 한 업체는 전체의 36%이고,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 부정적 전망을 한 업체들은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다.

남북경협 참여업체들은 남북경협사업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부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인 56개 업체(76%)가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하였다. 이들 외에는 15개 업체가 경협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개 업체만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5> 손해발생 시 부담여부**

(단위: 개, %)

	매우 큰 부담이다	상당한 부담이다	조금 부담된다	부담스럽지 않다	모르겠다	합계
업체 수	2	6	7	3	56	74
비율	3	8	9	4	76	100

조사대상 남북경협 참여업체들은 남북경협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하여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0개 업체(41%)로써 가장 많았다. “성공하였다”고 응답한 업체는 28개 업체로써 38%를 차지하였으며, “실패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개 업체로 21%에 해당하였다.

**<표 4-6> 남북경협 성과 자체평가**

(단위: 개, %)

	매우 성공했다	조금 성공했다	보통이다	조금 실패했다	매우 실패했다	합계
업체 수	10	18	30	15	1	74
비율	14	24	41	20	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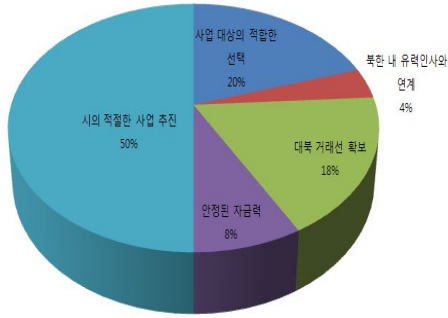
남북경협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대표적인 성공이유로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50%)을 손꼽았다. 이 외에는 사업대상의 적합한 선택(20%), 대북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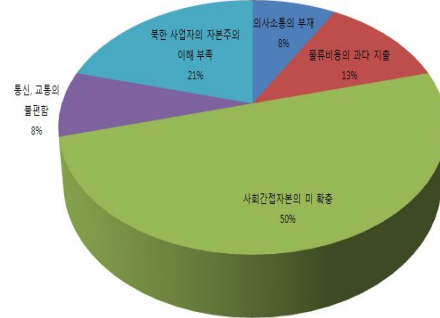
선 확보(18%) 등의 순서로 성공 이유를 들었다.

반면 남북경협에 실패하였다고 응답한 업체들은 다수가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지 아니하였음을 실패이유(50%)라 하였다. 이 외에는 북한 사업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21%)과 물류비용의 과다지출(13%) 등을 실패이유로 꼽았다.

[그림 4-7] 남북경협 성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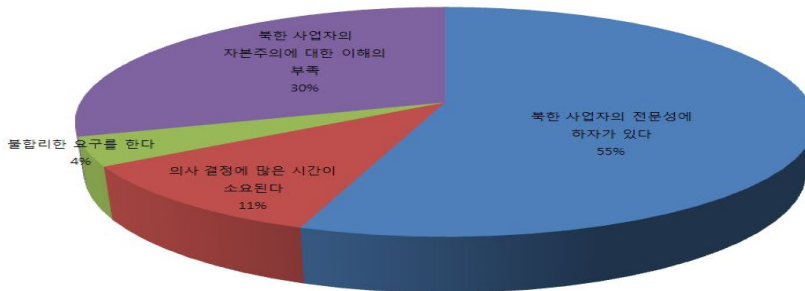


[그림 4-8] 남북경협 실패 이유



북한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북한 사업자의 전문성에 하자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5%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의 문제점에는 북한 사업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30%)과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11%)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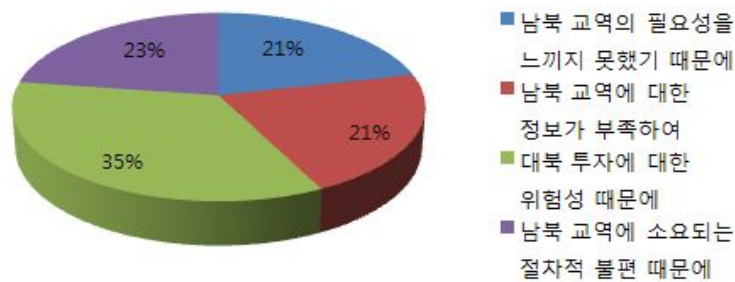
[그림 4-9] 남북 공동사업시 문제점



## (2) 남북경협 미 참여업체

설문대상 중 남북경협 미참여업체들은 참여하지 이유로써 가장 많은 수가 대북 투자의 위험성(35%)을 꼽았다. 이외에도 남북교역에 소요되는 절차적 불편(23%)과 남북교역에 대한 정보부족(21%), 남북교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21%)을 이유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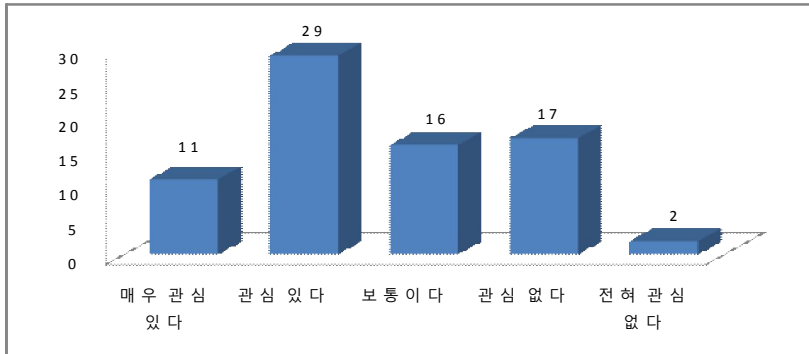
[그림 4-10] 남북경협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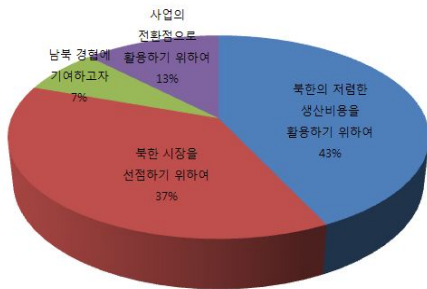
남북경협 미참여업체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 여부에 관하여는 응답업체 중 54%인 40개 업체가 관심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11개 업체는 매우 관심있다고 하였다. 반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5%인 19개 업체에 불과하여 남북경협 미참여 업체들도 남북경협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들은 가장 많은 수가 북한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활용하기 위함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37%)와 사업의 전환점으로 활용(13%)이라는 순으로 관심이유를 표시하였다. 반면 남북경협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들은 가장 많은 수가 그 이유로 대북 투자의 위험부담(42%)을 표시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적 제약(27%)과 북한 내 사업환경 조성이 미흡함(23%)을 남북경협에 관심없는 이유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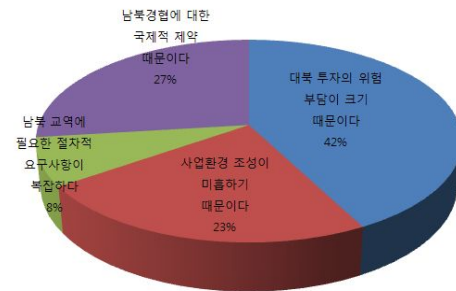
[그림 4-11]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 여부



[그림 4-12] 남북경협에 관심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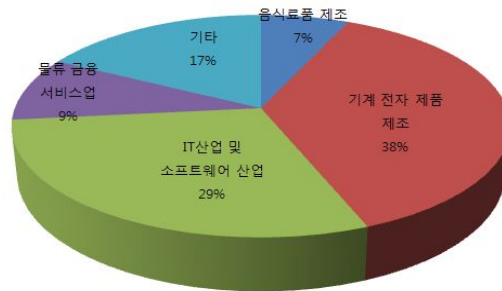


[그림 4-13] 남북경협에 관심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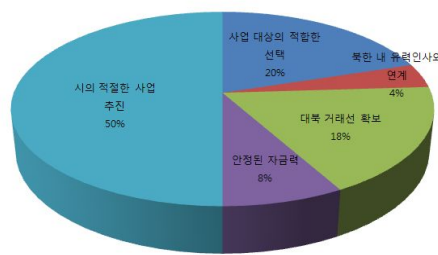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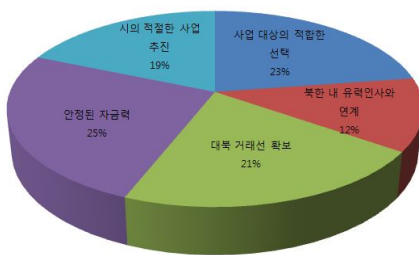
남북경협 미참여업체들은 “차후 남북경협에 참여할 경우 어떤 분야에 참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37%인 28개 업체가 기계·전자제품 제조 분야에 참여할 것이라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IT사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22개로써 29%를 차지하였으며, 물류·금융 서비스업과 음식료품 제조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을 표시하였다. 또한 기타에는 의료장비·섬유산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그림 4-14] 남북경협 참여시 진출 분야



가장 많은 수의 미참여 업체들은 안정된 자금력의 확보(25%)를 남북경협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꼽았다. 이와 유사한 비중으로 사업대상의 적절한 선택(23%)과 대북거래선의 확보(21%), 시의 적절한 사업의 추진(19%)이 필요함을 표시하였다. 이는 남북경협 참여업체중 다수가 사업의 성공이유로써 시의적절한 사업추진을 꼽은것과 대비된다. 또한 미참여업체는 안정된 자금력을 가장 큰 요건으로 표시(23%)한 것에 비하여 참여업체는 안정된 자금력을 성공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8%에 불과하여 실제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성공요인에 대한 시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5]미참여업체 남북경협 성공요인 [그림 4-16] 참여업체 남북경협 성공요인



#### 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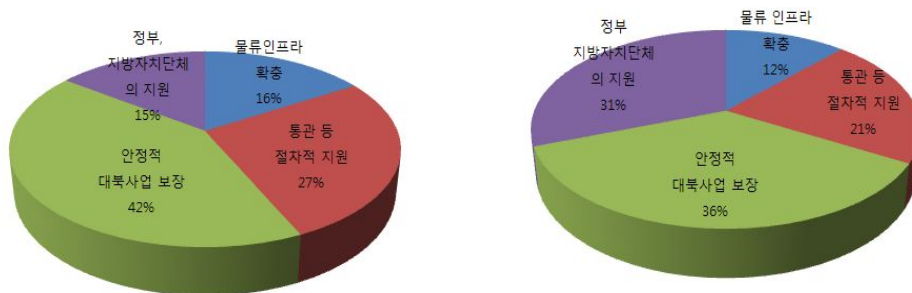
설문대상 업체들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안정적인 대북사업의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응답(58개 업체, 39%)하였다. 또한 통관 등 절차적 지원(36개 업체, 24%)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34개 업체, 23%)에 대하여도 많은 수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표 4-7〉 남북경협 활성화 최우선 과제

(단위: 개, %)

활성화 과제	참여업체		미참여업체		합계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물류인프라 확충	12	16	9	12	21	14
통관 등 절차적 지원	20	27	16	21	36	24
안정적 대북사업 보장	31	42	27	36	58	39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1	15	23	31	34	23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그림 4-17] 참여업체의 활성화 과제 [그림 4-18] 미참여업체의 활성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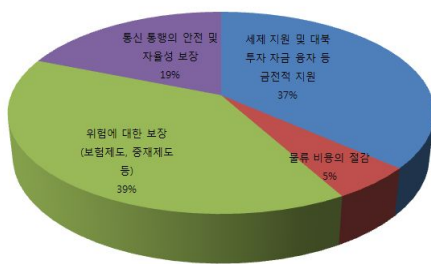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제지원 및 대북 투자자금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56개 업체, 38%)과 위험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46개 업체, 31%)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

참여업체의 경우 금전적 지원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참여업체의 경우 위험에 대한 보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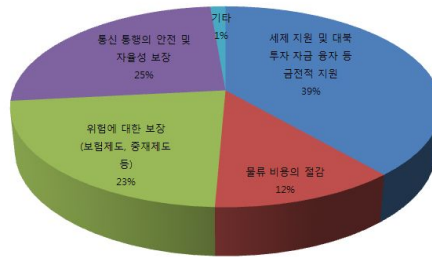
**<표 4-8> 남북경협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분야**

지원 필요 부문	참여업체		미참여업체		합계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세계지원 및 대북 투자자금융자 등 금전적 지원	27	36	29	39	56	38
물류 비용의 절감	4	5	9	12	13	9
위험에 대한 보장 (보험제도, 중재제도 등)	29	39	17	23	46	31
통신·통행의 안전 및 자율성 보장	14	19	19	25	33	22
기타			1	1	1	1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그림 4-19] 참여업체 지원필요 분야**



**[그림 4-20] 미참여업체 지원필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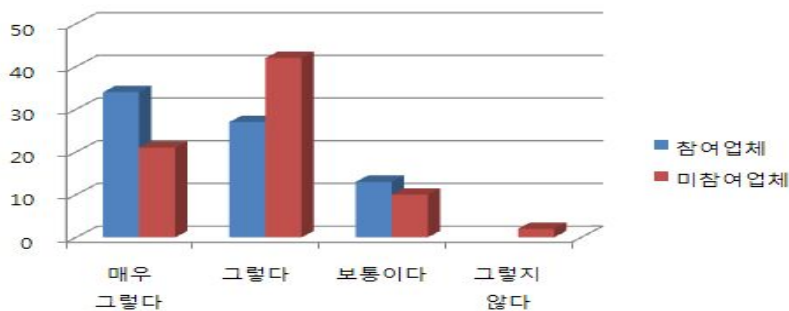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교류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설문대상 업체 대다수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참여업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4개 업체로써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미참여업체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2개 업체로써 다수를 차지하였다.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는 모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참여업체의 경우에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9> 남북경협 활성화 위한 사회·문화적 교류의 필요여부**

(단위: 개, %)

	참여업체		미참여업체		합계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매우 그렇다	34	46	21	28	55	37
그렇다	27	36	42	56	69	46
보통이다	13	18	10	13	23	15
그렇지 않다			2	3	2	1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그림 4-21]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사회·문화적 교류 필요성 인식**



남북경협에 있어 사회·문화 교류가 어떠한 이유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들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남·북 사람들의 인식을 서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70개 업체, 47%)을 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통신·통행 등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응답(41개 업체, 28%)과 전쟁재발의 위험을 감소시켜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다(31개 업체, 21%)라는 응답이 있었다.

남북경협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 모두 사회·문화적 교류가 남북경협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업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4-10> 사회·문화 교류의 필요성 이유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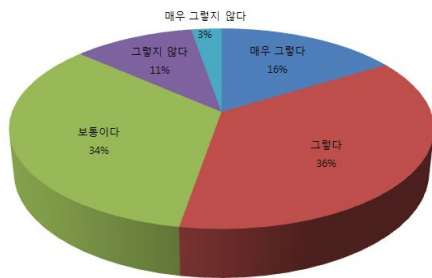
사회·문화 교류가 필요한 이유	참여업체		미참여업체		합계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사회·문화적 교류는 남북 사람의 인식을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6	62	24	32	70	47
사회·문화적 교류로 인하여 통신·통행 등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18	24	23	31	41	28
사회·문화적 교류는 전쟁재발의 위험 등 대북투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7	9	24	32	31	21
통일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3	4	4	5	7	5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표 4-11> 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한 비용부담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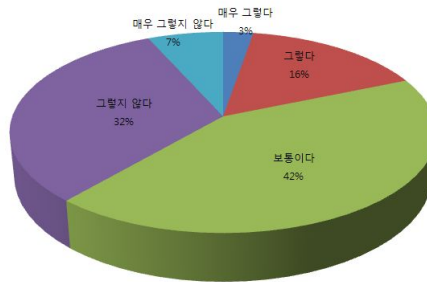
(단위: 개, %)

	참여업체		미참여업체		합계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매우 그렇다	12	16	2	3	14	9
그렇다	27	36	12	16	39	26
보통이다	25	34	32	43	57	38
그렇지 않다	8	11	24	32	32	21
매우 그렇지 않다	2	3	5	7	7	5
합계	74	100	75	100	149	100

[그림 4-22] 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의사



[그림 4-23] 미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의사





참여업체의 경우에는 39개 업체(5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다수가 비용부담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나, 미참여업체의 경우 43%인 32개 업체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24개 업체(32%)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참여업체에 비하여 비용부담의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설문대상 총 149개 업체 중 남북경협 참여업체 74개와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75개에 대한 남북경협과 관련한 현황 및 전망과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과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하 상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북경협 참여업체

첫째, 남북경협 참여업체는 남북경협사업 추진의 주된 장점을 북한의 저렴한 생산비용 활용으로 보고 있다.

둘째, 남북경협사업부문이 차지하는 부문이 각각 업체들의 사업규모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남북경협에 대한 안정성 미흡으로 인하여 대북사업의 비중을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경협 사업 추진 업체 중 다수의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수가 장차 예상되는 수익이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남북경협사업 추진업체들은 성공여부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였고, 성공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이 성공하였다고 한 경우는 “시의적절한 사업추진이 성공 이유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실패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이 미확충되었음을 이유로 하였다.

다섯째, 남북경협사업자들은 공동사업 추진 시 북한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공동사업 시 어려운 점은 북한 사업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사결정의 장기간 소요가 있었다.

## (2) 남북경협 미참여업체

첫째, 남북경협 미참여업체들은 대북투자의 위험성이 경협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대북 거래의 절차적 불편함과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미참여업체들은 조사대상 중54%가 남북경협사업에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저렴한 생산비용의 활용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관심 없다고 응답을 한 25%의 업체들은 그 이유를 대북 투자의 위험부담이 가장 크다고 표시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에 관한 국제적 제약과 북한 내 사업인프라의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셋째, 다수의 미참여업체들은 남북경협을 성공하기 위하여 안정된 자금력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또한 사업대상의 적절한 선택과 대북거래선의 확보, 시의 적절한 사업의 추진이 대북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남북경협 참여업체 중 다수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유으로써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을 꼽은 것과 대비된다. 또한 미참여업체는 안정된 자금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건으로 표시(23%)한 것에 비하여 참여업체는 안정된 자금력을 성공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8%에 불과하여 실제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의 성공요인에 대한 시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첫째, 설문대상 업체들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안정적인 대북 사업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58개 업체, 39%)하였다. 또한 통관 등 절차적 지

원(36개 업체, 24%)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34개 업체, 23%)에 대하여도 많은 수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제지원 및 대북 투자자금 융자 등 금전적 지원(56개 업체, 38%)과 위험에 대한 보장(46개 업체, 31%)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참여업체의 경우 금전적 지원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참여업체의 경우 위험에 대한 보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비중이 가장 높다.

셋째,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는 모두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교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참여업체의 경우에 조금 더 사회·문화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북경협에 있어 사회·문화 교류가 어떠한 이유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들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남·북 사람들의 인식을 서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70개 업체, 47%)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문화교류를 통하여 통신·통행 등의 자유가 보장될 것(41개 업체, 28%)과 전쟁재발의 위험을 감소시켜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다(31개 업체, 21%)고 하였다.

다섯째, 남북경협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 모두 사회·문화적 교류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업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업체의 경우에는 39개 업체(5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비교적 다수가 비용부담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나, 미참여업체의 경우 43%인 32개 업체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24개 업체(32%)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참여업체에 비하여 비용부담의 의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 제 2절 남북경제교류 협력과 대전의 역할

### 1. 대전의 산업특성 SWOT 분석

대전경제는 지난 5년간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왔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대전 경제는 성장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침체가 성장률하락, 고용악화 다시 침체를 계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장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내 소비가 감소되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침체가 더욱 심해졌다.

**<표 4-12> 지역내 총생산**

(단위: 백만 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	GRDP	685,946,405	731,626,781	786,362,375	817,811,875	857,443,992
서울	GRDP	168,143,359	175,502,445	179,402,560	185,091,210	193,108,220
부산	GRDP	40,193,358	42,928,672	44,983,989	46,278,512	47,983,890
울산	GRDP	33,173,721	34,414,225	39,329,411	40,648,318	41,500,523
인천	GRDP	33,392,071	34,556,276	36,640,124	37,915,746	41,021,262
대구	GRDP	23,438,439	24,507,055	26,046,026	26,729,159	27,928,390
대전	GRDP	16,045,560	17,423,899	18,549,778	18,639,434	19,454,776
광주	GRDP	14,930,492	15,541,210	16,572,635	17,853,839	19,149,887

대전 경제가 침체를 지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위주의 형태로 되어있어 경기침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대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대전 경제권은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외부의 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이러한 제조업은 외부지역의 부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대전지역은 제조업 등 수익산업이 부족한 전형적인 소비도시로써 외부에 지속적으로 부를 유출시키고 있다. 셋째, 대전 지역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에 소비·생산 면에서 타 지역과 상호의존도가 매우 크다. 또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교통·통신은 외부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가속화하여 대전 지역의 부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대전 산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산업에 관한 SWOT분석을 해 보았다.

## 1) 대전 산업의 강점

대전 산업의 강점은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덕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업은 2005년 8월 4일에 통과된 대덕밸리 일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대덕특구는 과학클러스터를 통하여 과학기술·산업육성·지역개발 등이 결합된 형태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생산기능이 유기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R&D중심의 대덕연구단지에 생산기능을 결합하고, 생산위주의 산업단지에 R&D기능을 결합하여 지속적 혁신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덕특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덕특구는 국내 최대의 연구기관 집적지이다.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19개,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7개, 기업부설연구 기관 323개, 대학 5개 등이 입주한 상태이다.

〈표 4-13〉 대덕특구의 연구기관 분포 15)

(2004년 12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대학
전국	157	27	790	403
대전	19 (11.9%)	7 (25.9%)	56 (7.1%)	25 (6.2%)
대덕	19 (11.9%)	7 (25.9%)	32 (4%)	5 (1.2%)

둘째, 국내 최대의 연구인력 보유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대덕특구에는 박사 5,806명, 석사 6,6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수치는 대덕특구에 우리나라 전체

15)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5

박사급 연구인력의 10.2%가 모여 있음을 말해주어,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인력이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대덕특구의 연구인력 분포<sup>16)</sup>**

(2004년 12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계	학위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전국	209,979	56,572	68,261	85,146
대전	17,464(8.3%)	-	-	-
대덕	14,387(6.8%)	5,806(10.2%)	6,625(9.7%)	2,534(2.9%)

대덕특구내에 연구이력이 집중되어 있음은 KAIST, 충남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보통신대, 대덕대학 등 5개 대학이 집적하여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최고의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이 최상위권<sup>17)</sup>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첨단기술의 핵심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표 4-15> 대덕특구의 특허 대표적 사례**

분야	대표적 사례
정보기술분야	국산전자교환기, 초고집적 D램 반도체, CDMA(ETRI)
생명과학분야	FACTIVE(LG 생명과학)
원자력분야	한국표준형원전(KNSP)개발, 핵연료국산화(원자력연구소)
항공우주분야	우리별1,2,3호 및 무궁화1,2,3호, 과학관측로켓 과학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넷째, 국내 최고의 R&D 인프라 보유하고 있다. 연구장비 구축 DB을 통한 연구장비 현황은 대덕이 5,883건으로 전체 구축 DB의 23.6%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5

17) 지적재산권 2004년, 특허등록 25,000여건(국내외 특허등록 전체의 10%)

〈표 4-16〉 대덕특구 연구장비 현황

전국	대덕	서울	경기	부산
24,877	5,883(23.6%)	4,925(19.8%)	2,585(10.4%)	1,743(7.0%)

마지막으로 대형 첨단장비를 개발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다. 핵융합장치, 연구용 원자로 등은 개별 연구기관이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대형 첨단장비이다. 대덕특구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설치·사용함으로써 타 연구단지과 차별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4-17〉 대덕특구의 첨단장비

장비명	기능	보유기관
하나로	30MW급 개방수조형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원자력 연구소
K-STAR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빛프라즈마	프라즈마 물성 연구시설	
핵자기공명 분광(NMR)	1 $\mu$ m(0,001mm) MR 영상 촬영 장치	
나노종합팹센터	나노기술의 종합적인 연구센터	KAIST

이외의 대전 산업의 강점이라 함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국에서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다는 점, 유성온천·계룡산 등 관광지가 대전 근교에 소재한다는 점 그리고 3군 본부, 군수사령부, 국방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대전 산업의 약점

대전은 건설, 요식업 등의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대전은 2000년부터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

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 업 등의 서비스업 비중은 2004년 68.6%로 90년대 50%대보다 급속히 증가하여 대전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되었다.

이러한 저 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는 외부의 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대전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강국면에 있는 것이다. 대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외부의 부를 끌어들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의 비중을 증가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여야 하나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첨단 제조업의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에는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고려할만한 요인이 없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정책 상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구조를 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대전 산업의 기회

이명박 정부는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광역 경제권으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광역 경제권 구상이란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제 활동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행정편의상 나누어진 도와 시의 경계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즉, 지리·행정영역 등의 제한을 제거하여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적 인접지역에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때 그 기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충청권의 광역경제권은 대전(대덕특구)-충남(서북부)-충북(오송, 오창)을 연결하는 구상으로써 충청권에 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면 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첫째, 대전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범위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활동 범위와 지역기



업에 대한 지원이 행정권역으로 제한된다면 현 시장환경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지역 기업의 활동영역 확대 및 기업 이윤 극대화의 제약 조건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둘째, 대전 경제권에 자본을 유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기업은 자금이 축적되어 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 산업권은 공장입지의 부족 등 환경이 열악하여 기업유치요인이 미흡하다. 그러나 충청경제광역권이 실현된다면 상기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고 이에따라 외부의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상기의 광역경제권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상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정책 가시화는 대전 경제 발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과학·의료 첨단 산업단지 구상은 대전이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산업을 원동력으로 하여 충남과 충북의 생산연계의 기술개발형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써 첫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형성을 구상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서는 기초과학, 원천기술분야의 R&D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게된다. 이를 대덕특구 중심으로 건설하게 된다면 조속한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취약한 원천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형성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인 첨단 의료산업은 대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적합하다. 대전은 교통·지리적 입지 및 온천과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의료산업 및 휴양산업을 육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4) 대전 산업의 위협

대전 산업의 위협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덕특구의 활용을 통하여 대전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그 이유는 연구 성과의 사업성 측면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대덕 R&D특구에는 공공연구기관과 연구자원이 집적되어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용화·응용연구 개발보다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 연구성과의 사업화율이 낮다. 실리콘 벨리와 대덕의 사업화(2004년 기준)를 비교해 보면, 실리콘벨리는 7,000여개의 벤처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덕은 824여개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벨리는 벤처캐피탈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반면 대덕은 4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흡하다.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행·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및 벤처기업에게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화를 지원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뛰어난 연구성과가 있어도 이를 핵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 밖에 지역 내 산업과의 연계전략이 부족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실용화 정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전망은 대전 산업발전에 위협으로 작용될 것이다. 대전 경제권은 저부가가치 3차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외부의 부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즉, 대전지역은 제조업 등 수익산업이 부족한 전형적인 소비도시로써 외부에 지속적으로 부를 유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한 사업환경을 갖고 있는 대전지역으로써는 이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전 지역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생산 면에서 타 지역과 상호의존도가 매우 크다. 또한 KTX, 인터넷의 발전은 대전산업의 외부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가속화하여 대전 지역의 부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다.

## 5) 종합

상기의 대전산업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은 최고의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덕특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최고급 과학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를 충남 서북부지역과 충북 오송·오창의 산업단지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은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능력을 타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상호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유성실버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대전은 대덕특구의 영향으로 연구개발능력이 충분하며, 전국에서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보장된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유성온천, 계룡산 등 인근에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실버특구(휴양지)를 조성하는데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표 4-18> 대전의 산업특성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최고의 R&amp;D 역량을 보유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소재</li> <li>○ KAIST, ICU, 충남대 등이 소재하여 최고급 과학인재를 배출</li> <li>○ 전국에서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높은 교통의 요충지</li> <li>○ 3군 본부, 군수사령부, 국방연구소 등 국방관련 기관의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li> <li>● 유성온천의 쇠락 및 일자리 창출 미흡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지역경제</li> <li>● 산업용지 부족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불리한 환경</li> </ul>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대전(대덕특구)-충남(서북부)-충북(오송, 오창)을 연결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li> <li>○ 새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상으로 동북아 R&amp;D 허브지역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풍부</li> <li>○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의 가시화</li> <li>○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대한민국의 경제과학 중심지로 부상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여 대전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함</li> <li>●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발전 저해 우려</li> <li>● KTX,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구조를 갖고 있는 대전의 소비유출 심화</li> <li>●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대전의 일부 상류층 유출 가능성 존재</li> </ul>

셋째, 국방관련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에는 3군본부, 군수사령부, 국방연구소 등 국방관련 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대덕특구에서는 기계·전자·통신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 이를 연계한다면 첨단 군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2. 남북경협에 대한 대전의 역할 모색

독일의 사례를 볼 때 통일을 위하여 낮은 단위의 교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상기 내용을 볼 때 경기도와 강원도는 적극적으로 상업적·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경협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이벤트성 단기 사업이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전이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형성과 신뢰구축 및 평화 증진의 기반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도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는 남북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화·지방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방외교정책의 비전으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위한 역할을 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의 대덕특구연계방안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는 1999년부터 남북과학기술협력비전구축을 위한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대

표적 사업으로써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 공동개발’, ‘북한지역 농작물 병충해 구제용 농약시험연구’ 등이 대북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은 낮은 수준의 사업으로써 매년 5~1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비만 투입되었고, 그 범위 또한 식량확충방안 등에 한정되어있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남북 당국자간 협력채널 구축 노력을 하였다. 2005년 7월에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문에서 「남북 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06년과 2007년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을 통하여 각각 실무접촉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표 4-19> 연도별 남북한 공동연구개발 사업추진 현황<sup>18)</sup>**

연도	과제명	과제수	지원액
1999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 연구개발	1개 과제	2.3억 원
2000	북한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구제용 농약시험연구 등	3개 과제	3.4억 원
2001	북한 과학기술정보 전용 Website 구축 운영 등	5개 과제	6.5억 원
2002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양성 시범협력사업 등	6개 과제	10 억 원
2003	남북공동 과학기술용어 비교조사 연구	7개 과제	10 억 원
2004	자생식물분야 남북공동연구 협력 기반 조성사업 등	5개 과제	5억 원
2005	북한의 풍력자원 및 풍력기술개발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11개 과제	6.5억 원
2006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기반구축사업	15개 과제	6.5억 원
2007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13개 과제	6.47억 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북 공동 과학기술용어 비교 조사’, ‘자생식물 분야 남북 공동연구 협력기반 조성사업’, ‘풍한풍력자원 및 풍력기술개발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등 매년 1건 가량의 공동연구 및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2007년에는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추진중이며 13개 과제에 6억4천700만원을 지원하였다.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은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식수행원으로 참여한 김우식 과학기술부 총리는 변영립 북한 국가과학원(우리나라 과기부에 해당) 원장과 회담을 하였다. 양국의 과학계 수장이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써 이를 기회로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교류·협

18) 과학기술부 자료

력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대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과학계에 관한 정보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를 위하여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확보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역할을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KISTI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으로써 북한과학기술정보를 가장 활발하게 다루는 국가연구기관이다. KISTI는 정보사업 일환으로 북한 과학기술뉴스레터(NKTech)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웹사이트([www.nktech.net](http://www.nktech.net))를 운영하는 등 북한 과학계 동향을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북한의 자연경관 및 과학기술을 소개한 동영상 자료 등을 남·북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이로써 단절된 북한 지역 과학기술 소개와 다양한 북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효율성 높은 협력사업 추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IT, R&D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개발이 끝나고 2차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단 지원 기능의 확충이 절실하다. 공단지원은 전략물자 반출 문제 등과 함께 IT, R&D, 원부자재 공급, 물류, 산업 연계 등 다양한 면에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눈을 떠서 접경지역에 이러한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를 기획하고 있다. 물류, 원부자재 공급 등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여 대전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 그러나 IT·R&D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대전은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KAIST, ICU, 충남대 등 고등교육기관이 소재하여 최고급 과학두뇌를 배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R&D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 특구에 고부가가치 기술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며 또한 대전의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산업입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사업연계는 개별 연구기관 또는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가 남북 기관 간 가교역할을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와 개성시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써 개성공단-대덕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면, 대덕특구의 R&D 개발 능력과 개성공단의 생산능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전의 북한 지자체와 자매결연 추진

대전이 북한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간 경험은 독일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험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력관계를 맺었고, 사회·문화 위주의 교류를 함으로써 주민의 상호접촉을 이끌어내었다. 이로써 양자간 이질감을 극복함으로써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사례를 보아 대전과 북한 지자체의 자매결연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전의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의 노력은 지방화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적합하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의 발전과 효과적인 남북경협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일원화된 중앙정부 단위의 교류로 인하여 융통성과 신축성이 결여된 연결통로를 지방간 교류를 통하여 다원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남북교류의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방간 교류는 인접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인접 지역간에 교류한 사례도 있으나 다수가 사상·산업·생산연계 등 여러 특징에 따라 결연을 맺었다. 따라서 대전도 인접지역은 아니나 산업·생산연계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전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자매결연을 맺을 북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동서독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은 정치·종교·사

상·교육·산업(중공업, 신발산업 등)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교훈삼아 대전도 자매결연을 맺은 북한의 지자체와 상호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계획적인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3) IT협력사업 추진

남북간 IT협력사업은 198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이래 S/W 공동개발, 평양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가지의 IT분야에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IT관련 경험은 기업단위의 참여로 인하여 그 규모가 작고,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4-20> IT 남북협력사업**

(단위: 만 달러, 07.12.31 기준)

업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용역 대가
KT, 온세통신	1988.11.11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47.5	-	-
삼성전자	2000.3.13	S/W 공동개발	554	-	510.3
하나비즈닷컴	2001.7.18	프로그램 공동개발	200	-	184
엔트랙, IKD그룹	2001.8.22	평양고려정보기술센터건립	400	170.2	-
KT	2004.7.23	S/W 공동개발	129.4	-	127.9
에스피메디텍	2004.9.17	의료 S/W 개발	159	6.7	-
알티즌하이텍	2005.9.21	CTP 인쇄기 개발	10	9.6	3.6
아사달	2006.7.5	디자인콘텐츠제작	32.8	-	11.7
경기디지털콘 텐츠진흥원	2006.8.23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1.3	-	1.3
계		9개 업체	1,534	186.5	838.8



**<표 4-21> IT 협력 취소사업**

(단위: 만 달러, 07.12.31 기준)

업체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용역 대가
(주)훈넷	2001.12.29 승인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20	20	
	2004.1.19 취소				
브이케이(주)	2004.9.23 승인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	43.3		11.4
	2006.11.1 취소				
(주)스튜디오 투모로우	2005.6.1 승인	에니메이션 제작	3.8		1.0
	2007.5.18 취소				
계		3개 업체	67.1	20	

이러한 현실에서 대전이 IT분야에 관하여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한다면 새로운 남북협력 분야로써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은 상기의 SWOT분석에서 보았듯이 고등교육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IT관련 전문인력양성 인프라가 우수하고, 대덕특구를 배경으로 한 핵심기술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S/W개발분야에 인재가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남측이 최근에 S/W 개발이 기피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북측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함이 필요할 것이다.

**4) 대전지역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전의 지원 방안**

상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 중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53개 중 5개의 업체만이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어 그 비중이 9.4%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대전에 소재하는 기업의 남북경협 사업 참여 비중은 더욱 적을 것이다. 비록 대전지역에 남북경협 참여업체가 적으나 남북경협 미참여업체에 대한 남북경협사업 추진 관심여부 조사에 따르면 54%가 “관심있다” 또는 “매우 관심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에따라 대전지역의 기업들도 남북경협 상황의 개선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남북경협사업을 적

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수의 남북경협 미참여업체들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를 “대북 투자의 위험성 때문” 이라 응답하였다. 또한 남북교역에 대한 정보의 부족도 남북경협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하였다. 대전의 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위험성 감소에 대하여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단, 대전시의 자매결연 추진이나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로 남북간 교류의 확충과 상호 인식의 상이함을 개선하는데 일조함으로써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대북투자 위험성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전담부서와 연구기관을 설치할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 전담부서 및 연구기관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기관과 연계하여 최신정보의 확보과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앙정책과 교차되지 않는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전담기관을 이용하여 대전소재 기업에게 남북경협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을 통하여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앙·지방정부차원의 지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4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4%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 정도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남북경협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적합여부**

(단위: 개,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업체 수	1	6	22	35	10	74
비중	1	8	30	47	14	100

남북경협 참여·미참여업체 중 다수는 중앙·지방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남

북경협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원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대전 소재기업에게 세제지원 또는 남북경협자금 융자에 대한 방안을 구상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 중 기금대출제도의 활용을 장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대출제도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남한주민이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대전광역시는 대전 소재 기업에게 이러한 제도를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남북경협업체의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보증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대전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설문조사를 보면 남북경협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 모두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를 함으로써 첫째, 남북사람의 인식을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둘째, 통신·통행 등의 자유 보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셋째, 전쟁 재발의 위험 등 대북투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넷째, 장차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 응답하였다. 그러나 기업차원에서는 사회·문화 교류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경협 참여업체의 경우 비교적 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미참여업체의 경우 비용부담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남북간 이질성 감소, 전쟁재발위험 감소, 통일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는 공공이 이익을 얻는 외부효과로써 중앙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대전광역시도 중앙정부와나 기타 시·도의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추진 등에 발맞추어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대전지역 기업들의 남북경협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제 5 장

---

## 결 론



##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남북경협 참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전이외의 지자체들은 이미 남북경협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대전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전광역시는 남북경협 참여가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다른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남북경협은 침체되어 있는 대전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이를 통하여 대전 경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북한 지자체와 자매결연 추진

대전이 북한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의 북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대전의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의 노력은 지방화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적합하다. 셋째, 대전의 남북경협 참여는 기존의 일원화된 중앙정부 단위의 교류로 인하여 융통성과 신축성이 결여된 연결통로를 다원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협과의 연계에 있어 대전광역시의 북한 지자체와 자매결연은 대전의 가교역할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대전은 자매결연을 맺을 북한의 지자체를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남북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추진 사례를 보면 단순히 도시규모, 역사적 유사성, 지명의 유사함을 이유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충분한 연구가 수반

되지 아니한 자매결연 사례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으며, 대전은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충분한 정보확보와 연구를 통하여 상호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북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북한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대전의 산업과 북한의 자매결연 지자체의 산업을 연계시키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북한 내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가 가교역할을 하여 남북기관 간 연결을 시켜준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써 대전광역시와 개성직할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대전산업의 강점인 대덕특구의 R&D를 개성공단의 산업능력과 결합하여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북관련 담당부서 및 연구기관 개설 필요

현재 대전은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부서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사업을 추진할 경우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내에 대북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전문가 공무원을 공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대북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정부 및 각 지자체의 대북전담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연계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민간단위의 가칭 ‘남북교류활성화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민간의 참여 없이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면 주민의 무관심 또는 불만 속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각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단위의 남북교류단체를 통해 주민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이를 본받아 대전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민간단위의 남북교류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관련 연구소를 개설함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자체의 남북경협사업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충분한 연구·조사 없이 추진한 경우 실패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남북경협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자체 단위의 남북경협 연구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의 통일문제연구센터, 강원발전연구원의 DMZ·북강원센터 등이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접경지역 발전방안, DMZ 공동개발 등 새로운 사업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대전도 대전발전연구원 내 통일문제 연구센터를 개설하여 대전의 남북경협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이 필요할 것이다.

### 3) 남북경협 및 남북경협기금 관련 조례 제정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법적근거와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항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1998년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2001년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7년에 부산, 전북, 경북, 제주 및 충북 제천시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등은 자체적인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과 제주도는 기금설립에 관련한 조례재정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대전, 충북, 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운영 및 운영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 및 충청권은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마련하여 남북교류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기금설립을 위한 기반의 마련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 4) 대전 소재기업에 대한 남북경협 지원정책 추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전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 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및 연구기관을 통하여 대전소재 기업들에게 최신정보제공 및 북한 내 사업연계에 대하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전담부서 및 연구기관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기관과 연계하여 최신정보의 확보와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앙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전소재 기업에게 남북경협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을 통하여 대전소재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참여·미참여 기업들은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지방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대전소재 기업들의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또는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하여 남북경협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 중 기금대출제도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남북경협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덕특구지원본부의 남북경협사업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 산업의 강점은 무엇보다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대덕특구지원본부는 대덕특구 내에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생산기능이 유기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덕특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특구의 장점인 R&D와 IT개발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생산환경이 결합하여 상생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덕특구지원본부 내에 남북경협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조직을 구성하여 대덕특구 내의 기업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남북경협에 대한 사업연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일동, 2008, “북한경제리뷰”, KDI
- 김영운, 2008, “남북경협 현황과 과제”, 수은북한경제
- 김은영, 2008, “신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자료 모음”, 북한경제리뷰
- 김진근, 2006, “경남의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방향”, 경남발전 연구원
- 김태현, “동독의 대외무역구조와 내독무역의 발전”
- 김태현, “동서독무역의 경제통합론적 특징과 남북교역에의 시사점”
- 김태현, “대외무역 대비 민족내부거래의 비중분석”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http://north.gg.go.kr/nambuk/>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http://www.kidmac.com/>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http://uni.provin.gangwon.kr/>
- 무역진흥본부 남북교역팀, 2007, “남북교역 2006년 평가·2007년 전망 및 애로사항”
- 서재진, 2008, “남북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KINU정책연구 08-01
- 심익섭, 1991, “독일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제 25권 제 4호
- 심지홍·김강식, 2003,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경상논총 제 28집 한독경상학회
- 윤기관, 2007, “남북경협활성화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 장안봉, 2003,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4권 제 3호
- 정세현, 1997,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민족통일연구원
- 채경석, 2004,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탐색연구”, 정치·정부연구 제 7권 2호
- 최용환, 2008, “2008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과 경기도의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 최장호, 2007,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

- 구”
- 통일부, 2004, 『북한의 대외과학기술협력 동향』
- \_\_\_\_\_, 2008, 『2008 남북교류협력동향』
- \_\_\_\_\_, 2008, 『2008 통일백서』
- \_\_\_\_\_,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_\_\_\_\_,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_\_\_\_\_,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_\_\_\_\_, 『남북협력기금법』
- \_\_\_\_\_, 『접경지역지원법』
- \_\_\_\_\_,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http://peaceway.unikorea.go.kr/>
- 통일연구원, 2004,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 한부영, 2000,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지방행정연구 제 14권 제 2호 통권 49호
- KDI 북한경제팀, 2008, “2008년 남북경협에 관한 경협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NK테크, <http://www.nktech.net/>

기본연구보고서 2008-3

---

남북경제협력과 대전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revitalization of Daejeon regional  
economic

---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12월 31일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160-2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 39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노산인쇄출판사   TEL 042-254-9392   FAX 042-254-6755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